

제 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6차 본회의 【2014.12.16(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I. 안전현황	4
1. 회계구분	4
2. 심사경과	4
II. 예산안 일반현황	5
1. 예산안 총괄개요	5
2. 2014년도 예산대비 증감현황	6
가. 세입(일반·특별회계)	6
나. 세출(일반·특별회계)	7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11
1. 2015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1
2. 인천시 2015년도 예산안의 특징	15
3. 세입예산	18
가. 연도별 재정규모	18
나. 일반회계	26
다. 지방세	27
라. 세외수입	39
마. 지방교부세	45
바. 보조금	46

사. 지방채 .....	48
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3
4. 세출예산 .....	56
가. 기능별 .....	56
나. 조직별 .....	65
다. 성질별 .....	67
라. 재정 투·융자사업 .....	80
마. 계속비사업 .....	82
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	87
사. 주민참여예산 .....	90
아. 성인지예산 .....	91
IV. 심사결과 .....	93
1. 중점심사내용 .....	93
2. 토론요지 .....	95
3. 심사결과 .....	96
4. 소수의견 .....	109
5. 기타사항 .....	109

##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1. 11.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12. 09.

라. 상정일자 : 2014. 12. 09. ~ 12. 11.

○ 2014. 12. 9.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 12. 10.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 12. 11.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경과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박 준 하
- 검토보고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II

예산안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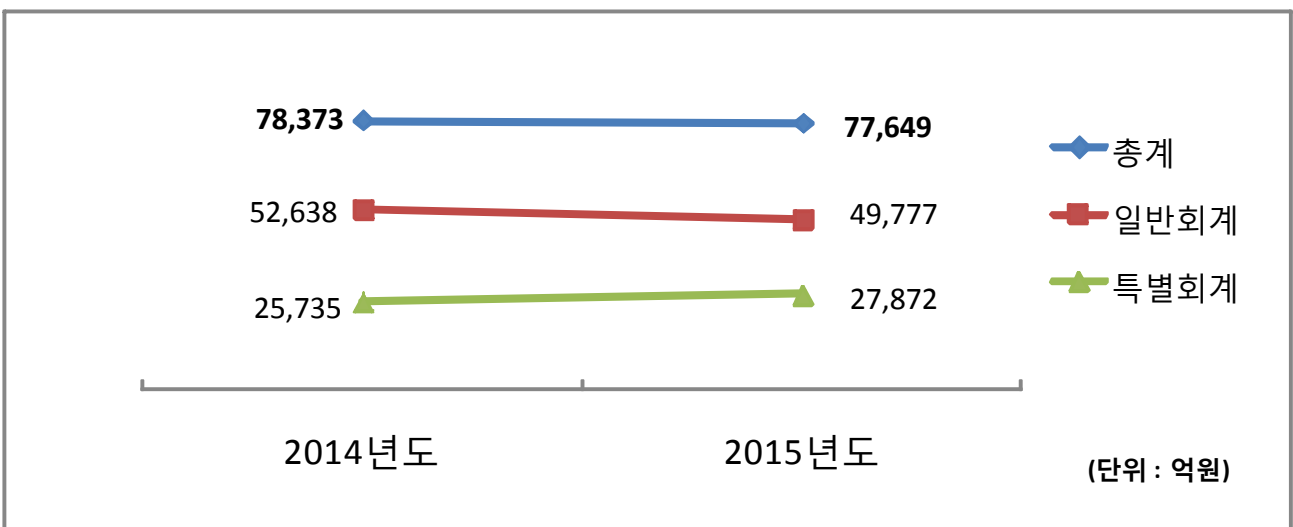
1. 예산안 총괄개요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7,764,871,755	7,837,281,742	△72,409,987	△0.92
일 반 회 계	4,977,717,426	5,263,812,161	△286,094,735	△5.44
특 별 회 계	2,787,154,329	2,573,469,581	213,684,748	8.30
공기업특별회계	1,319,522,788	1,240,764,000	78,758,788	6.35
기 타 특별회계	1,467,631,541	1,332,705,581	134,925,960	10.12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예산안 총규모 증감 비교>



## 2. 2014년도 예산대비 증감현황

### 가. 세 입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7,764,871,755	7,837,281,742	△72,409,987	△0.92
지 방 세	2,666,481,000	2,450,223,000	216,258,000	8.83
보 통 세	2,196,259,000	1,922,393,000	273,866,000	14.25
목 적 세	409,535,000	337,906,000	71,629,000	21.20
지 난 년 도 수 입	60,687,000	189,924,000	△129,237,000	△68.05
세 외 수 입	1,275,346,992	1,649,617,010	△374,270,018	△22.6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49,552,643	687,509,974	262,042,669	38.1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25,794,349	962,107,036	△636,312,687	△66.14
지 방 교 부 세	292,300,000	321,194,221	△28,894,221	△9.00
보 조 금	1,950,034,527	1,758,954,260	191,080,267	10.86
지 방 채	874,514,000	841,160,440	33,353,560	3.97
차 입 금	0	195,000,000	△195,000,000	△100.00
지 방 채 증 권	874,514,000	646,160,440	228,353,560	35.34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706,195,236	816,132,811	△109,937,575	△13.47
보 전 수 입 등	145,517,030	118,310,595	27,206,435	23.00
내 부 거 래	560,678,206	697,822,216	△137,144,010	△19.65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 나. 세 출 (일반·특별회계)

### 1)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7,764,871,755	7,837,281,742	△72,409,987	△0.92
일 반 공 공 행 정	969,966,584	1,062,138,687	△92,172,103	△8.68
공공질서및안전	44,151,127	32,736,051	11,415,076	34.87
교 육	552,231,910	525,965,470	26,266,440	4.99
문 화 및 관 광	772,869,319	752,695,445	20,173,874	2.68
환 경 보 호	510,260,955	518,691,332	△8,430,377	△1.63
사 회 복 지	2,063,685,955	1,857,245,541	206,440,414	11.12
보 건	83,287,881	100,561,347	△17,273,466	△17.18
농 립 해 양 수 산	102,089,727	146,514,702	△44,424,975	△30.32
산 업 · 중 소 기 업	66,508,367	100,015,236	△33,506,869	△33.50
수 송 및 교 통	1,183,998,606	1,274,354,165	△90,355,559	△7.0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804,000,951	886,121,737	△82,120,786	△9.27
과 학 기 술	45,997,004	40,699,543	5,297,461	13.02
예 비 비	51,704,227	55,039,717	△3,335,490	△6.06
기 타	514,119,142	484,502,769	29,616,373	6.11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 2)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7,764,871,755	7,837,281,742	△72,409,987	△0.92
의회사무처	11,315,931	11,677,126	△361,195	△3.09
대변인실	8,234,306	10,977,526	△2,743,220	△24.99
감사관실	478,219	441,528	36,691	8.31
교육기획관실	552,353,309	526,083,717	26,269,592	4.99
도시디자인추진단	1,397,512	4,042,642	△2,645,130	△65.43
규제개혁추진단	78,580	14,704	63,876	434.41
국제협력관실	6,355,677	9,207,708	△2,852,031	△30.97
소통기획관실	225,188	288,749	△63,561	△22.01
기획관리실	1,026,665,160	1,086,621,849	△59,956,689	△5.52
경제수도추진본부	192,720,801	274,719,399	△81,998,598	△29.85
안전행정국	156,990,644	179,023,879	△22,033,235	△12.31
보건복지국	862,066,953	830,028,912	32,038,041	3.86
여성가족국	1,173,371,466	1,010,890,924	162,480,542	16.07
건설교통국	635,680,440	701,244,535	△65,564,095	△9.35
문화관광체육국	133,607,020	162,730,380	△29,123,360	△17.90
도시계획국	167,403,623	238,788,651	△71,385,028	△29.89
환경녹지국	372,101,815	359,388,139	12,713,676	3.54
항만공항해양국	186,647,397	190,506,619	△3,859,222	△2.03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616,354,982	559,671,456	56,683,526	10.13
소방안전본부	57,994,094	40,304,535	17,689,559	43.8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인 재 개 발 원	5,981,255	6,038,786	△57,531	△0.95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3,830,535	14,011,480	△180,945	△1.29
농 업 기 술 센 터	5,810,240	7,087,805	△1,277,565	△18.02
지 역 소 방 서 등	135,678,789	128,613,818	7,064,971	5.49
상 수 도 사 업 본 부	274,408,482	288,670,989	△14,262,507	△4.94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452,627,822	468,210,006	△15,582,184	△3.33
종 합 건 설 본 부	59,934,371	72,667,481	△12,733,110	△17.52
여 성 복 지 관	2,437,123	2,547,511	△110,388	△4.33
여 성 의 광 장	1,793,110	1,857,906	△64,796	△3.49
종 합 문 화 예 술 회 관	20,508,276	20,311,686	196,590	0.97
동 부 공 원 사 업 소	12,963,073	12,456,856	506,217	4.06
서 부 공 원 사 업 소	4,312,258	4,447,620	△135,362	△3.04
북 부 공 원 사 업 소	3,802,853	4,008,086	△205,233	△5.12
미 추 홀 도 서 관	6,141,228	6,066,292	74,936	1.24
시 립 박 물 관	6,844,865	7,075,146	△230,281	△3.25
구 월 농 축 산 물 도 매 시 장	3,269,154	3,123,805	145,349	4.65
삼 산 농 산 물 도 매 시 장	3,521,460	3,538,550	△17,090	△0.48
수 산 자 원 연 구 소	3,233,920	2,965,539	268,381	9.05
서 울 사 무 소	536,146	489,942	46,204	9.43
수 산 사 무 소	1,186,609	1,174,425	12,184	1.04
서 부 여 성 회 관	3,335,755	3,295,607	40,148	1.22
아 동 복 지 관	1,036,495	323,466	713,029	220.43
경 제 자 유 구 역 청	579,634,819	581,645,962	△2,011,143	△0.35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 3)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7,764,871,755	100.0	7,837,281,742	100.0	△72,409,987	△0.92
인 건 비	382,366,256	4.92	359,302,493	4.58	23,063,763	6.42
물 건 비	225,284,088	2.90	232,798,739	2.97	△7,514,651	△3.23
경 상 이 전	3,455,014,717	44.50	3,427,682,280	43.74	27,332,437	0.80
자 본 지 출	1,343,954,868	17.31	1,848,189,562	23.58	△504,234,694	△27.28
용자 및 출자	135,936,000	1.75	85,794,000	1.09	50,142,000	58.44
보 전 재 원	962,051,865	12.39	696,898,615	8.89	265,153,250	38.05
내 부 거 래	954,363,516	12.29	1,056,936,334	13.49	△102,572,818	△9.70
예비비 및 기타	305,900,445	3.94	129,679,719	1.65	176,220,726	135.89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 1. 2015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가.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 ○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태임
-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00~'07년 평균성장률 6.5%) 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됨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4.1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1	3.0	3.7	3.9	4.1	4.1
- 선진국	1.4	1.3	2.2	2.3	2.5	2.6
- 신흥국	4.9	4.7	5.1	5.4	5.4	5.5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임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은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다만, 2014년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의 지출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국정과제·지역공약 관련 재정소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 지원 요구, 각종 재정수반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지출소요도 지속 제기될 전망이다
- 특히, 2015년의 이러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지출소요 증가로 인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경제활력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경기부진 → 세입감소 →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나.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전망

### ○ 세입전망은

- 자체수입은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 지방세중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할 전망이다
-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징수 관련 법령의 본격 시행('14.8.7)과 징수 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이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 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는 내수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지방채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 ○ 세출전망은

-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마무리로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등 지역기반 SOC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 기존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 설계와 재정지원 수요 증가

## 2. 인천시 2015년도 예산안의 특징

### 가. 세입예산의 경우

- 지방세는 정부의 세율인상율과 9월 징수실적 반영에도 불구하고 예년추계 증가율보다 하향 조정
- 세외수입은 예년과 달리 대규모 재산 매각 없이 통상적 수준의 매각분만을 계상
- 의존재원중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폐지와 신규지표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
- 지방채는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위기단체<sup>1)</sup> 지정 가능성으로 인해 의무 매출공채인 한도의 지방채 및 고금리 차환채를 제외한 신규 발행은 전면 중단함

### 나. 세출예산의 경우

- 관행적, 중복적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원점 재검토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 조정을 통한 세출을 감축시킴
- 업무추진비, 포상금, 맞춤형 복지 등 공무원 관련경비를 절감하여 슬선수범하였고 또한 시의원의 의정비 동결 등 의회 차원에서 재정난 극복에 적극 동참
- 시민의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 복지분야인 공공질서·안전,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분야 반영
- 재정악화로 인해 법정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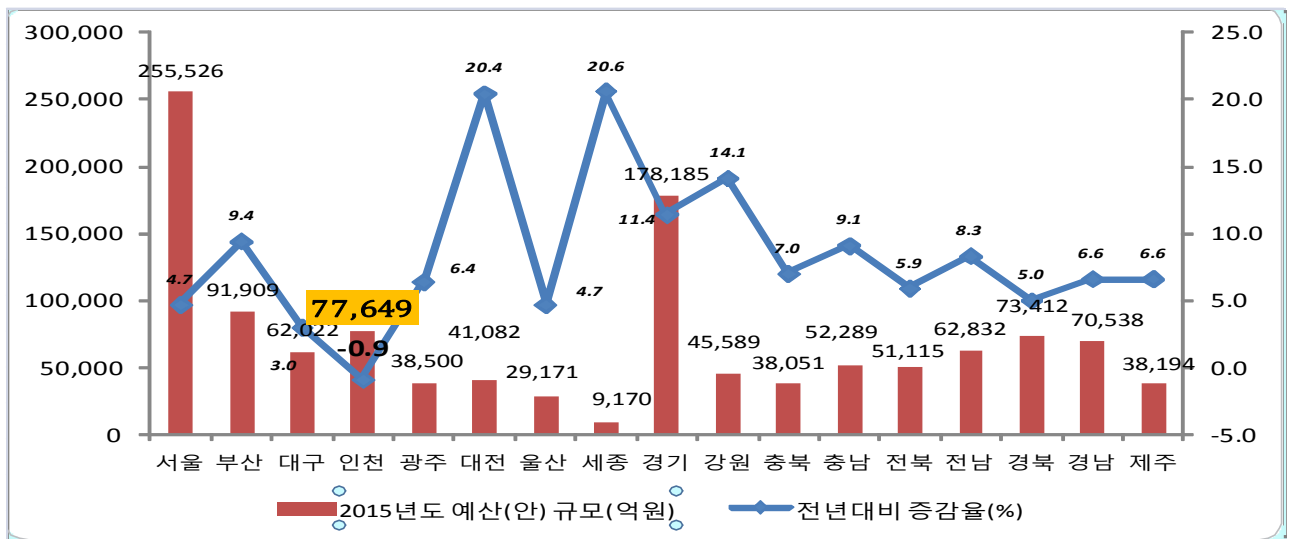
## 다. 예산안 규모관련

### ○ 시도별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2014년에 113조 4,105억원 규모에서 다소 큰 폭인 7.2% 8조 1,130 억원이 증가하여 121조 5,234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적게는 4.7%에서 많게는 2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부에서는 국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2015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음
- 이에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천시의 경우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재정규모를 줄여가고 있어 정부의 확장 정책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015년도 시도별 예산편성(안) 규모 및 증감율 비교 >





- 인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등 대형 투자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더 이상의 투자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책충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 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도별 2015년도 예산편성안<sup>2)</sup> >

(단위 : 억원/%)

시도명	2015 예산안	2014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1,215,234	1,134,105	81,130	7.2	
서울	255,526	244,133	11,393	4.7	
부산	91,909	84,049	7,860	9.4	
대구	62,022	60,206	1,816	3.0	
<b>인천</b>	<b>77,649</b>	<b>78,373</b>	<b>△724</b>	<b>△0.9</b>	
광주	38,500	36,179	2,321	6.4	
대전	41,082	34,129	6,953	20.4	
울산	29,171	27,851	1,320	4.7	
세종	9,170	7,605	1,565	20.6	
경기	178,185	159,906	18,279	11.4	
강원	45,589	39,965	5,624	14.1	
충북	38,051	35,574	2,477	6.9	
충남	52,289	47,926	4,363	9.1	
전북	51,115	48,268	2,847	5.9	
전남	62,832	58,032	4,800	8.3	
경북	73,412	69,940	3,472	5.0	
경남	70,538	66,143	4,395	6.6	
제주	38,194	35,825	2,369	6.6	

<sup>2)</sup> 2014. 11. 11일 각 시도별 예산안 의회 제출 금액(총계 기준)

### 3. 세입예산

#### 가. 연도별 재정규모

##### □ 2011년도이후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공격적 편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1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7.7%로 감소되었고, 2012년도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으로 14.9%로 대폭 증액 편성됨
- 201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큰 폭인 7.5% 감소되었다가 2014년도에는 지방소비세 및 과년도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2.1% 증액 편성함
- 2015년도에는 지방채 신규발행의 어려움, 대규모 재산 매각 등 비정상적 세입 중단 등으로 전년에 비해 0.9% 감소한 규모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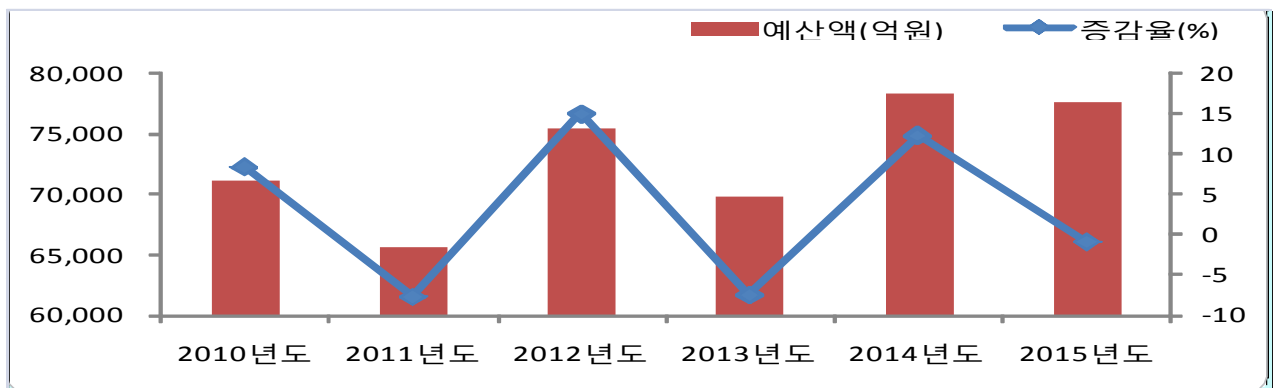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

(단위 : 억원 / %)

회 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증감율 ('11대비)	예산액	증감율 ('12대비)	예산액	증감율 ('13대비)	예산액	증감율 ('14대비)
합 계	65,637	75,448	14.9	69,768	△7.5	78,373	12.3	77,649	△0.9
일반회계	39,515	44,428	12.4	46,833	5.4	52,638	12.4	49,777	△5.4
특별회계	26,121	31,020	18.7	22,935	△26.1	25,735	12.2	27,872	8.3

\* 연도별 예산은 당초예산액 기준

#### <최근 재정규모 증감 추이>



□ 인천시의 재정자립도<sup>3)</sup>는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자체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세입 징수기반이 양호함을 나타내는 재정분석 지표로
- 연도별 순계기준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에 53.6%에서 2014년에는 44.8%로 8.8%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기반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09년에 75.7%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4년도의 61.5%에 이어 2015년에는 57.5%로 하락하였고 특히, 2009년이후 매우 큰폭인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광역시 연도별 재정자립도<sup>4)</sup>>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up>5)</sup>	2015년	['14-'09] 차이*
전국(순계)	53.6	52.2	51.9	52.3	51.1	44.8	-	△8.8
서울	90.4	83.4	88.8	88.7	87.7	80.4	-	△10.0
부산	55.5	54.1	52.1	52.9	51.8	47.5	-	△8.0
대구	50.7	52.7	48.6	47.6	46.5	42.1	-	△8.6
<b>인천</b>	<b>75.7</b>	<b>70.0</b>	<b>65.8</b>	<b>70.4</b>	<b>64.6</b>	<b>61.5</b>	<b>57.5</b>	<b>△14.2</b>
광주	42.9	43.2	42.0	41.1	40.1	36.8	-	△6.1
대전	54.5	52.1	51.9	52.7	52.2	43.6	-	△10.9
울산	59.3	60.2	62.5	63.6	62.7	53.3	-	△6.0
세종	-	-	-	-	38.8	47.6	-	-

\* 2009년과 비교하여 2014년 재정자립도 차이 비교

3) 재정자립도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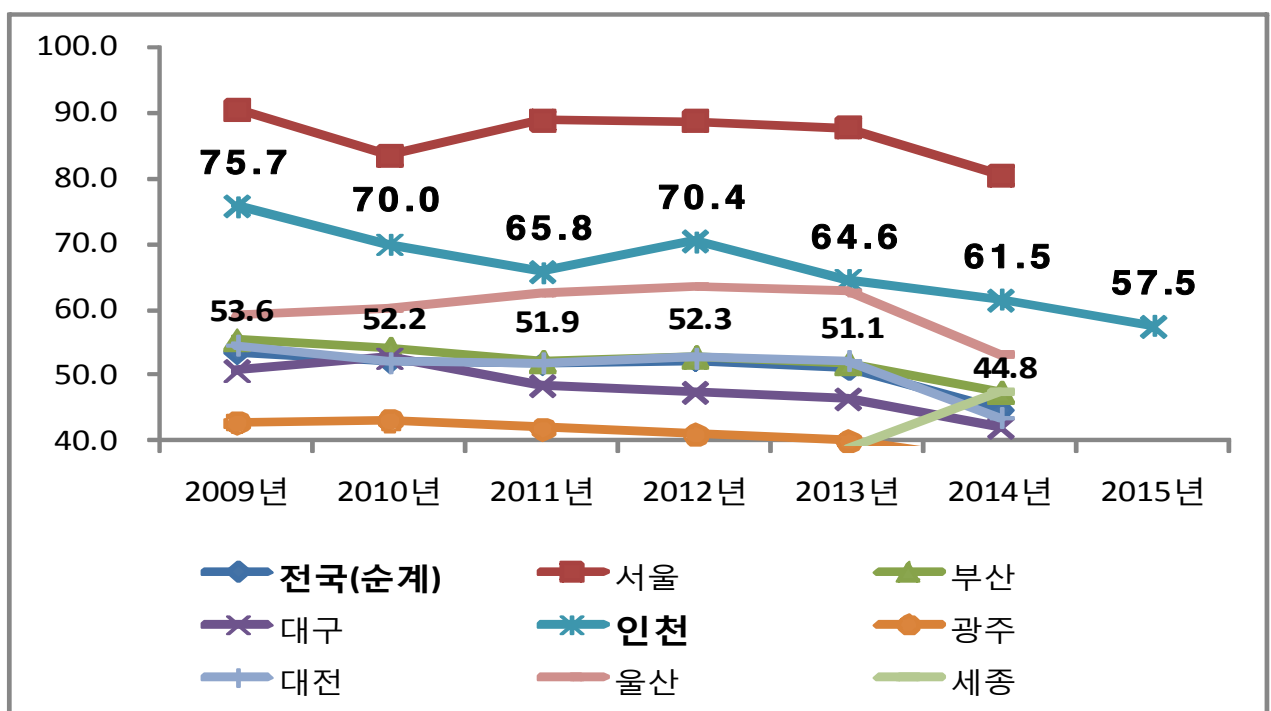
4) 2014년도 예산개요(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참조

5) 2013년까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던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 등이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 과목 신설로 재정자립도가 다소 큰 폭으로 감소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을 제외한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2014년 기준으로 다소 큰 폭인 16.7%나 높아 세입 징수 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년 큰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시의 세입 징수기반이 매년 악화되고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채 등의 증가로 일반회계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시의 재정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수 있으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특·광역시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

(단위 : %)



□ 인천시의 재정자주도<sup>6)</sup>는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분석 지표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은 것으로
- 연도별 순계기준 전국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009년에 78.9%에서 2014년에는 69.2%로 9.7%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의 하락폭인 8.8%보다 다소 높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특·광역시 연도별 재정자주도<sup>7)</sup>>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up>8)</sup>	2015년	['14-'09] 차이*
전국(순계)	78.9	75.7	76.7	77.2	76.6	69.2	-	△9.7
서울	92.2	84.2	89.7	89.6	85.5	81.2	-	△11.0
부산	69.7	68.2	69.9	71.7	69.9	63.0	-	△6.7
대구	70.3	68.9	69.1	70.7	70.3	64.0	-	△6.3
<b>인천</b>	<b>79.7</b>	<b>76.7</b>	<b>73.4</b>	<b>77.1</b>	<b>71.9</b>	<b>68.0</b>	<b>63.7</b>	<b>△11.7</b>
광주	68.2	65.2	65.4	65.2	63.0	58.3	-	△9.9
대전	69.9	67.7	70.6	71.8	71.6	62.1	-	△7.8
울산	71.1	70.9	73.6	72.2	70.7	58.9	-	△12.2
세종	-	-	-	-	77.7	77.3	-	-

\* 2009년과 비교하여 2014년 재정자주도 차이 비교

6) 재정자주도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7) 2014년도 예산개요(인천광역시) '재정자주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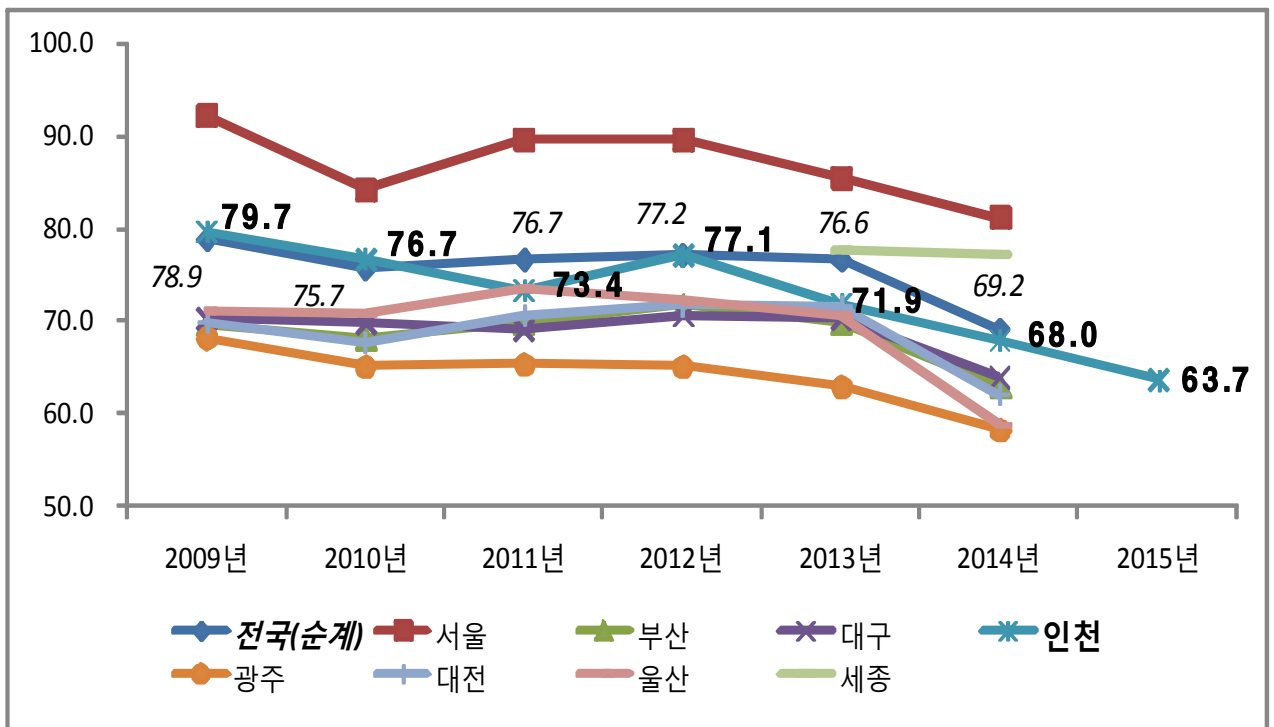
8) 2013년까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던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 등이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 과목 신설로 재정자주도가 다소 큰 폭으로 감소

○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09년에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79.7%를 나타냈으나 2011년부터 전국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4년도에 처음으로 60%대인 68.0%로 하락한데 이어 2015년에는 63.7%를 나타내고 있어 2009년 이후 매우 큰 폭인 16.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서울을 제외한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의 재정자주도는 다소 높은 편이나 2011년부터는 전국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재정자주도 산정시 자주재원으로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지방교부세에서의 불이익이 인천시 재정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시의 재정권 독립이 매년 악화됨을 알 수 있음

<특·광역시 재정자주도 연도별 추이>

(단위 : %)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sup>9)</sup>은

- 특별시·광역시 및 도·특별자치도 평균 모두 완만한 증가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2009년 869천원에서 2010년 927천원, 2011년 799천원 등 일정한 방향성 없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3년 756천원에서 2014년 851천원에 이어 2015년 920천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특별시·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인천시의 부담액이 다소 낮은 편으로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율을 보면 평균 91.6%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이 타시도와 달리 일정한 방향성 없이 매년 불규칙하게 부담액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지방세 추계의 적정성이나 추계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sup>10)</sup>>

(단위 : 천원 / %)

구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특별시·광역시	945.5	913	927	904	977	967	985	-
인천시 (비율 <sup>11)</sup> )	865.7 (91.6)	869 (95.2)	927 (100.0)	799 (88.4)	938 (96.0)	756 (78.2)	851 (86.4)	920 -
도·특별자치도	492.0	440	452	477	526	535	5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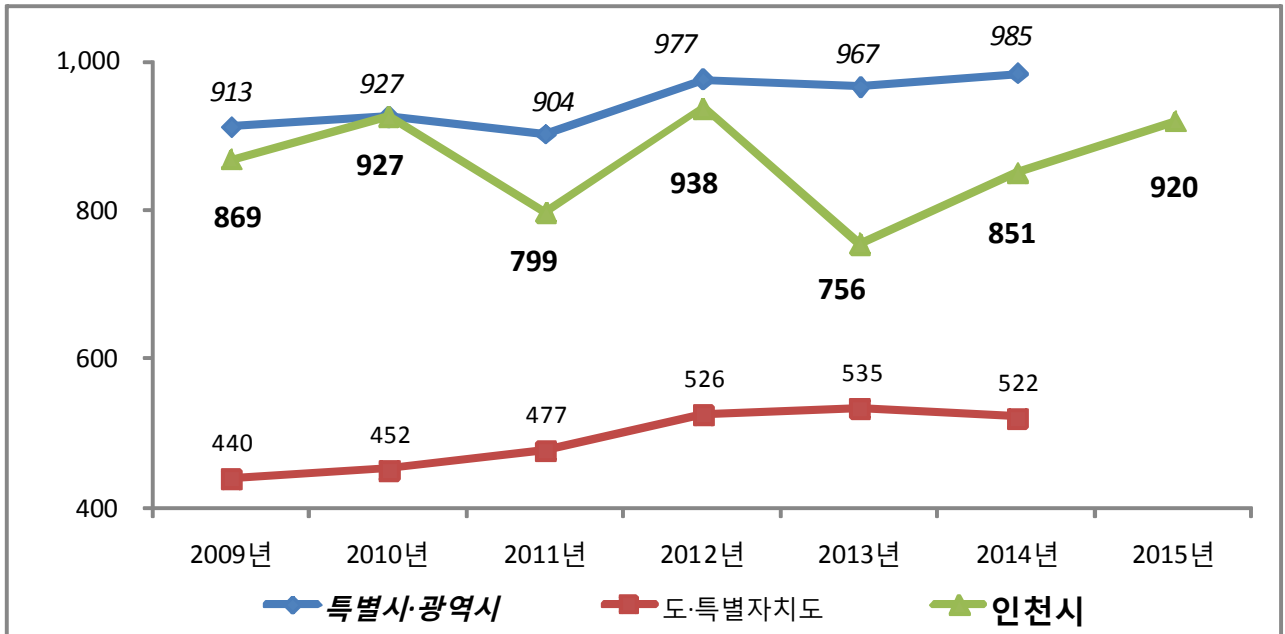
9)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919,771원) : 지방세(2,666,481백만원) / 인구수(2,899,071명)  
[2014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제외]

10) 2014년도 예산개요(인천광역시)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참조

11) 특별시·광역시 대비 인천시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율

###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

(단위 : 천원)



#### □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sup>12)</sup>은

- 특별시·광역시 및 도·특별자치도 평균 모두 큰 편차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을 나타내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2010년 주민1인당 17만원인 반면, 2013년에는 2010년의 2배가 넘는 34만원으로 급등하는 등 매년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특·광역시의 평균 13만원에 비해 인천은 2배에 가까운 23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급격한 증가<sup>13)</sup>에 기인하였다 할 것임

12)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2015년 : 110.962원) : 세외수입액(321,687백만원) / 인구수(2,899,071명)  
[2014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제외]

13) 2012년 - 송도 6·8공구 8,094억원  
2013년 - 인천터미널 9,000억원  
2014년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3100억원 등



- 한편 2015년에는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어 2014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수년간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임에도 일시적·임시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음을 볼 수 있음
- 특히 2015년의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은 특·광역시의 최근 수년간의 평균인 13만원의 83.5% 수준인 11만원에 불과한 바, 세외수입 추계가 적정한지 또한 탈루되는 수입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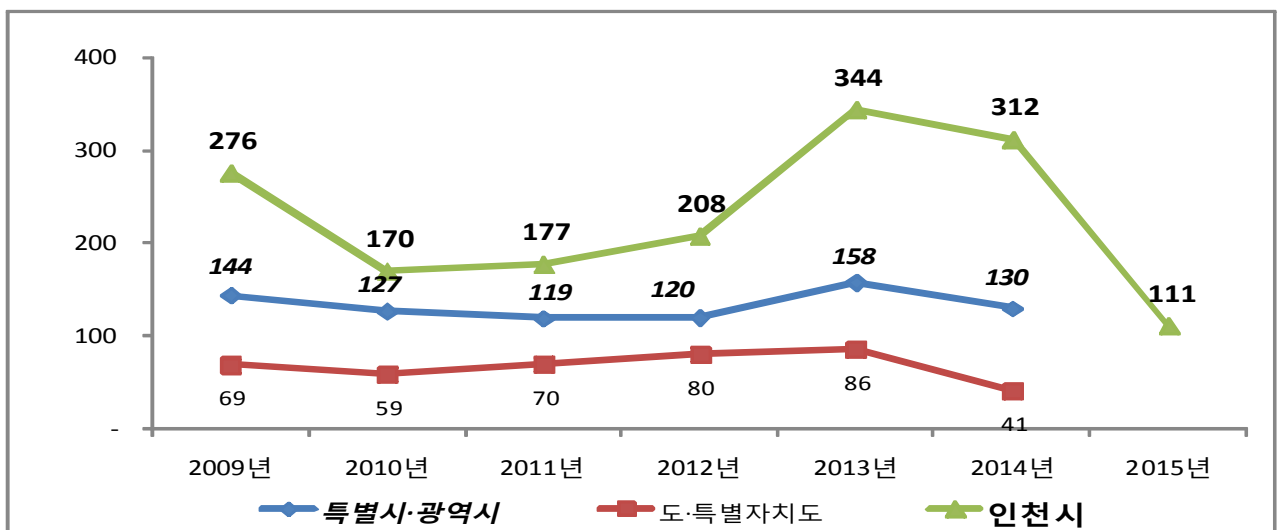
<연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sup>14)</sup>>

(단위 : 천원 / %)

구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특별시·광역시	133.0	144	127	119	120	158	130	-
<b>인천시</b>	<b>228.3</b>	<b>276</b>	<b>170</b>	<b>177</b>	<b>208</b>	<b>344</b>	<b>312</b>	<b>111</b>
(비율 <sup>15)</sup> )	(171.7)	(191.7)	(133.9)	(148.7)	(173.3)	(217.7)	(240.0)	-
도·특별자치도	67.5	69	59	70	80	86	41	-

<연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추이>

(단위 : 천원)



14)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 연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참조

15) 특별시·광역시 대비 인천시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비율

## 나. 일반회계

- 총규모는 4조 9,777억원으로 2014년도 세입규모 5조 2,638억원 대비 5.44%인 2,86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8.83% 2,163억원이 증가한 2조 6,665억원으로 편성한 반면,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68.05% 5,770억원 대폭 감소한 3,217억원으로 편성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97%, 288억원이 감소한 2,923억원인 반면, 보조금은 다소 큰폭인 15.05%, 1,900억원이 증가하여 1조 4,531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 지방채는 2014년 대비 △48.51%, 1,008억원이 감소한 1,070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58%, 142억원이 증가한 1,371억원으로 편성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4,977,717	5,263,813	△286,095	△5.44
지 방 세 수 입	2,666,481	2,450,223	216,258	8.83
보 통 세	2,196,259	1,922,393	273,866	14.25
목 적 세	409,535	337,906	71,629	21.20
지 난 년 도 수 입	60,687	189,924	△129,237	△68.05
세 외 수 입	321,687	898,664	△576,977	△64.2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7,857	62,243	25,614	41.15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33,830	836,421	△602,591	△72.04
지 방 교 부 세	292,300	321,113	△28,813	△8.97
보 조 금	1,453,085	1,263,056	190,028	15.05
지 방 채	107,040	207,867	△100,827	△48.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124	122,889	14,235	11.58
보 전 수 입 등	2,088	5,747	△3,658	△63.66
내 부 거 래	135,036	117,143	17,893	15.27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 다. 지방세

- 시 재정운영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대비 8.83%, 2,163억원이 증가한 2조 6,665억원이고,
-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15.92% 1,331억원, 주민세 54.55% 51억원, 자동차세 10.87% 387억원, 담배소비세 22.84% 340억원, 지방소비세 20.22% 452억원, 지방소득세 6.03% 19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6.57% 519억원 및 지방교육세 7.08% 197억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대폭 증가하였음.
- 다만 레저세는 △8.31% 18억원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대폭인 △68.05% 1,292억원 감소 편성하였음

### < 지방세 세목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세 계	2,666,481	100.00	2,450,223	100.00	216,258	8.83
보 통 세	2,196,259	82.37	1,922,393	78.46	273,866	14.25
취 득 세	968,880	36.34	835,818	34.11	133,062	15.92
등록면허세	3,154	0.12	3,140	0.13	14	0.45
주 민 세	14,498	0.54	9,381	0.38	5,117	54.55
자 동 차 세	394,743	14.80	356,056	14.53	38,687	10.87
레 저 세	19,748	0.74	21,537	0.88	△1,789	△8.31
담배소비세	183,042	6.86	149,008	6.08	34,034	22.84
지방소비세	268,800	10.08	223,596	9.13	45,204	20.22
지방소득세	343,394	12.88	323,857	13.22	19,537	6.03
목 적 세	409,535	15.36	337,906	13.79	71,629	21.20
지역자원시설세	111,938	4.20	59,997	2.45	51,941	86.57
지방교육세	297,597	11.16	277,909	11.34	19,688	7.08
지난년도수입	60,687	2.28	189,924	7.75	△129,237	△68.05

※ 참고자료 -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세입전망 및 추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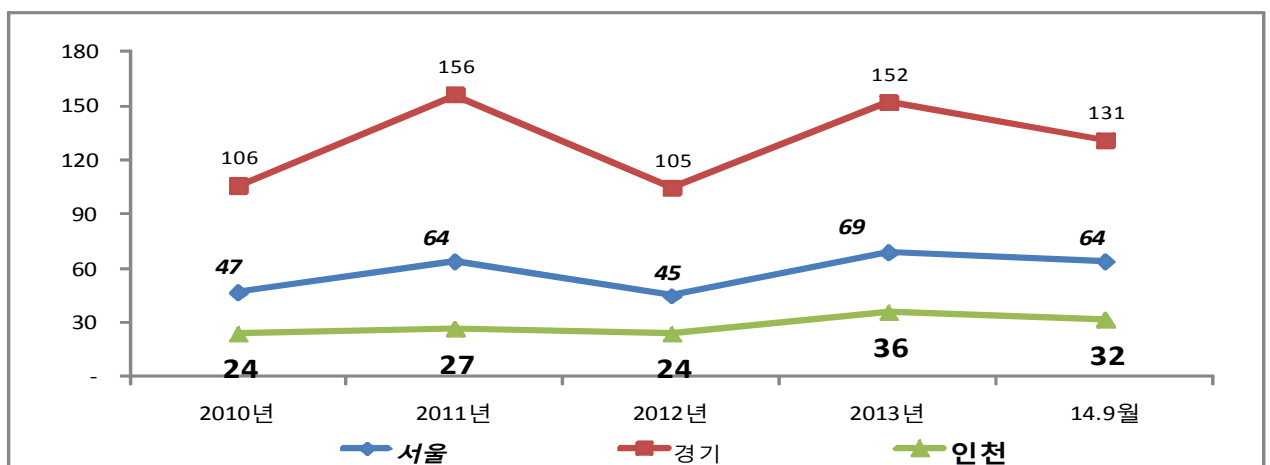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7쪽 ~ 9쪽) 참조

## 1) 취득세

- 매년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전년도 8,358억원보다 15.9% 1,331억원이 증액된 9,68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지방세중 구성비도 2014년에는 34.1%에서 2015년에는 36.3%로 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 취득세 수입중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최근 수년간의 아파트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0년이후 2013년까지 매매건수가 연평균 1.3%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은 12 ~ 13%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천의 경우는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부동산 개발로 서울·경기 등 주변 수도권지역보다 높은 14.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0년 4.2%에 불과하던 매매 비중도 2014.9월 현재 6.4%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년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보다는 전월세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취득세 증가폭이 너무 낙관적이 아닌지 여부 및 2015년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등 취득세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파트매매 연도별·행정구역별 현황 추이>

(단위 : 천건)



## <아파트매매 연도별·행정구역별 현황16)>

(단위 : 건 / 천㎡ / %)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14년 9월현재
전국	동수	2,892,255	580,910	705,303	503,587	604,331	1.3	498,124
	면적	219,600	44,034	53,545	38,170	45,854	1.4	37,997
서울	동수	287,886	46,672	63,622	44,771	68,702	13.8	64,119
	면적	22,340	3,674	4,882	3,437	5,306	13.0	5,041
경기	동수	650,134	105,537	156,134	105,086	151,895	12.9	131,482
	면적	49,381	7,868	11,341	7,989	11,889	14.8	10,294
인천 (비중)	동수	143,046 (4.9)	24,199 (4.2)	27,090 (3.8)	23,900 (4.7)	36,177 (6.0)	14.3	31,680 (6.4)
	면적	10,767 (4.9)	1,758 (4.0)	1,965 (3.7)	1,814 (4.8)	2,757 (6.0)	16.2	2,473 (6.5)

○ 아울러 자동차 등록시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sup>17)</sup>의 매입요율을 지난 2010년(배기량 2000cc 초과 12/100 ⇒ 6/100)과 2011년(6/100 ⇒ 5/100) 두차례에 걸쳐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 조정<sup>18)</sup>을 통한 리스 차량의 적극적인 등록 유치로 자동차 대수가 2011년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0만대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까지는 5.2%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13년 5.9%에 이어 금년 10월 현재 6.2% 1,233천대에 달하고 있음

16)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 정보 포털([www.omnara.go.kr](http://www.omnara.go.kr)) 부동산 통계자료 참조

1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18) 시도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배기량 2,000cc초과 기준)

▶ 인천 : 취득세과표의 5/100    ▶ 서울 : 취득세과표의 20/100    ▶ 경기도 : 취득세과표의 12/100

- 이러한 사유로 2015년에도 취득세 징수 목표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인하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세입 증가와 같은 신규 세원발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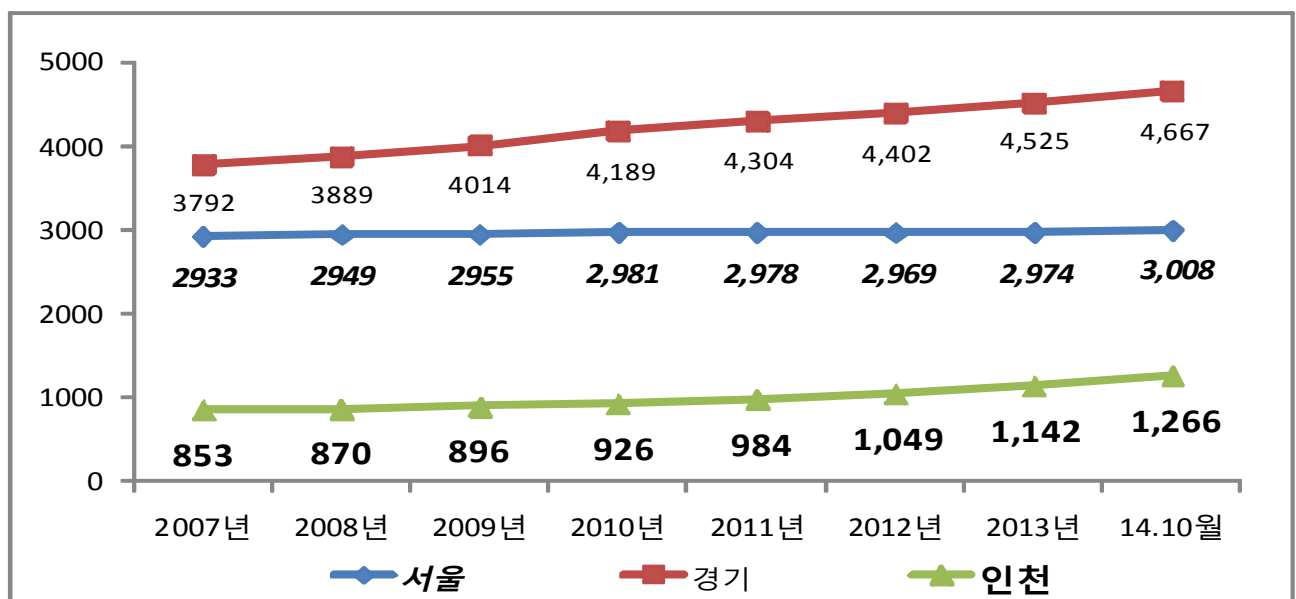
### <자동차 등록 현황 19)>

(단위 : 천대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14년 10월 현재
전국	16,428	16,794	17,325	17,941	18,437	18,871	19,401	2.8	20,008
서울	2,933	2,949	2,955	2,981	2,978	2,969	2,974	0.2	3,008
경기	3,792	3,889	4,014	4,189	4,304	4,402	4,525	3.0	4,667
<b>인천</b> (비중)	<b>853</b> (5.2)	<b>870</b> (5.2)	<b>896</b> (5.2)	<b>926</b> (5.2)	<b>984</b> (5.2)	<b>1,049</b> (5.6)	<b>1,142</b> (5.9)	<b>5.0</b>	<b>1,233</b> (6.2)

### <자동차 등록 현황 추이>

(단위 : 천건)



19)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자동차 등록 현황 참조

## 2) 주민세

- 지난 1999년 3,000원이던 주민세를 4,500원<sup>20)</sup>으로 인상후 묶여 있던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그간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9.15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2014년 94억원에 불과하던 주민세는 2015년 무려 54.6% 51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지방세법<sup>21)</sup>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2014. 11.6일 회부(의안번호 1912295)되어 심사 중이고, 국회 통과후에도 세율에 대해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진행 일정 및 세율 등에 따른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자동차세

- 그간의 물가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50%, 2016년 75% 및 2017년부터는 100% 인상되는 것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 2014년 3,561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는 10.9% 687억원 증액된 3,947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 일정 및 세율 인상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주민세 세율)

21)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4) 담배소비세

-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 2일 의결되고 2015.1.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금년 1,490억원보다 22.84% 340억원 증액된 1,83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 법령 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상승할 경우 담배소비는 34% 감소한다고 가정<sup>22)</sup>하여 2014년 1,490억원이던 담배소비세의 2015년 세수추계 금액은 1,543억원으로 전년보다 3.6% 53억원밖에 증가되지 않음에도 6배가 넘게 증액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5) 지방소비세

- 과세대상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부가가치세<sup>23)</sup>와 동일한 지방소비세는 2014년 2,236억원 수준에서 2015년에는 20.2% 452억원이 상승한 2,688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 정부의 전체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 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2.3%(216.5 → 221.5조원 증 5조원)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참조(의안번호 1911797)

【담배소비세 인상시 세수추계(2014년 예산기준)】

$[1,490\text{억원} + (1,490\text{억원} \times 57.1\%)] - [1,490\text{억원} + (1,490\text{억원} \times 57.1\%)] \times 34.1\% = 1,543\text{억원}$

2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지방세법

제65조(지방소비세 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 특히 부가가치세의 2014년 예산편성액은 58조 4,545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는 58조 9008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어 0.76% 4,463억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율과 비교하여 시의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2014년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0.38% 수준에서 2015년에는 0.46%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적정한 세수 규모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예산 편성 비교>**

(단위 : 억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부가가치세(국세)	589,008	584,545	4,463	0.76
지방소비세(지방세) (구성비)	2,688 (0.46)	2,236 (0.38)	452 (0.08)	20.22 (21.05)

## 6) 지방소득세

- 과세대상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sup>24)</sup>와 연계되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5.72%, 0.06% 증가하여 평균 3.12%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2015년도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도 3.8%에 불구한 실정인 반면,
- 인천시의 2015년도 지방소득세는 6.03%로 관련 국세 증가율보다 높게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산정근거 및 방법 등 세수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예산 편성 비교>

(단위 : 억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 감	증감율
국 세 소 계	1,035,370	1,004,002	31,368	3.12
소 득 세	574,904	543,821	31,083	5.72
법 인 세	460,466	460,181	285	0.06
지 방 소 득 세	3,434	3,239	195	6.03

#### 24)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지방세법

제86조(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등)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7)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도 징수 목표가 600억원인데 반해 2015년에는 배에 가까운 86.57% 519억원이 증가한 1,11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는 2011년 이후 전체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 3.6%보다는 다소 높은 15.5%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폭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계 근거 및 징수 가능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인천시와 가장 연관이 높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 하고자 발전량 키로와트시(kWh)당 현재 0.15원<sup>25)</sup>인 것을 0.75원으로 0.5원 인상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발의<sup>26)</sup>되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이기는 하나 아직 세율 인상폭이나 법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의 세입결손이 생길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자원시설세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2015년
지 방 세	22,031	26,265	21,495	24,502	3.6	26,665
지역자원시설세	389	449	486	600	15.5	1,119

25) 지방세법 제146조(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 발전량 키로와트시(kWh)당 0.15원

26) 2014.9.30일 김태흠의원의 19인 발의 - 2014.10.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임

## 8)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6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7.08% 197억원이 증액된 2,976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 대책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9) 지난년도수입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징수가 이월된 수입인 지난년도수입은 2014년에 1,899억원 규모에서 △68.05% 1,293억원 대폭 감소한 607억원 규모로 편성함
- 이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주)DCRE 체납분 1,689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DCRE 체납분에 대한 소송 진행, 징수 가능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주)DCRE 지방세 과년도 수입 관련 추진 경과 >

- 2012. 4월 : (주)DCRE에 취·등록세 부과
- 2012. 5월 :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 청구
- 2013. 6월 :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 2013. 6 ~ : 부동산(70필지), 토지보상금 등 압류중
- 2013. 9월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165)
- 2014. 12. 12 : 변론기일(예정)

10) 지방세 지출보고서

○ 한편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sup>27)</sup>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2013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실적이 7,171억원에서 2014년 추계규모는 전년대비 △50.6% 3,629억원 대폭 감소한 3,54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13(결산)	'14(추계)	증 감	증감율
비과세·감면액(A)	717,102	354,216	△362,886	△50.6
비 과 세	77,480	48,585	△28,895	△37.3
감 면	639,622	305,631	△333,991	△52.2
지방세 징수액(B)	2,216,838	2,450,223	233,385	10.5
비과세·감면율[A/(A+b)]	24.4	12.6	△11.8	△48.4

-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도 2013년 24.4%에서 12.6%로 대폭 감소되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지난 2008년 (주)DCRE에 취·등록세 감면후 2012년 부과하여 현재까지 소송진행이 진행되고 있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1,689억원으로 인해 수년째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 바,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지방세중 비과세 또는 감면 실적(직전 회계연도) 및 추정 금액(해당 회계연도)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개발 및 군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과세나 감면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13(결산)	비중	‘14(추계)	비중	증 감	증감율
총 계	717,102	100.0	354,216	100.0	△36,2886	△50.6
보 통 세	711,490	99.2	347,922	98.2	△363,568	△51.1
취 득 세	669,023	93.3	332,751	93.9	△336,272	△50.3
(구)취득세	8,974	1.2	-	-	△8,974	순감
등 록 세	19,767	2.7	-	-	△19,767	순감
등록면허세	392	0.1	132	0.1	△260	△66.2
주 민 세	455	0.1	1,211	0.3	756	166.0
자 동 차 세	12,878	1.8	13,828	3.9	950	7.3
목 적 세	5,612	0.8	6,294	1.8	682	12.1
지역자원시설세	5,610	0.8	6,294	1.8	684	12.1
도시계획세	2	0.0	-	-	△2	순감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현황 및 2015년도 전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17쪽 ~ 18쪽) 참조

## 라. 세외수입

○ 인천시의 자체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수입인 세외수입은 금년 1조 6,496억원 규모에서 △22.69% 3,743억원이 감소한 1조 2,75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하나인 재산매각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됨

### < 세외수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율
세 외 수 입 계	1,275,347	100.00	1,649,617	100.00	△374,270	△22.6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49,553	74.45	687,510	41.68	262,043	38.11
재 산 임 대 수 입	6,050	0.47	5,614	0.34	436	7.76
사 용 료 수 입	439,179	34.44	388,707	23.56	50,472	12.98
수 수 료 수 입	10,841	0.85	10,197	0.62	644	6.31
사 업 수 입	478,181	37.49	268,419	16.27	209,762	78.15
징수교부금수입	4,874	0.38	4,963	0.30	△89	△1.80
이 자 수 입	10,428	0.82	9,610	0.58	818	8.5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25,794	25.55	962,107	58.32	△636,313	△66.14
재 산 매 각 수 입	107,898	8.46	578,784	35.09	△470,886	△81.36
부 담 금	117,167	9.19	142,602	8.64	△25,434	△17.84
과장금및과태료등	1,980	0.16	1,907	0.12	73	3.84
기 타 수 입	77,389	6.07	202,271	12.26	△124,881	△61.74
지 난 연 도 수 입	21,360	1.67	36,544	2.22	△15,184	△41.55

※ 2015년도 세외수입 전망 및 2014년도 대비 증감사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21쪽 ~ 22쪽) 참조

## 1) 사용료수입

- 정상적 세외수입중 하나인 사용료 수입은 2014년에 3,887억원 규모에서 12.98% 505억원 증액된 4,39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사용료 수입의 증가 요인은 도로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중 도로사용료는 금년 102억원에서 304억원으로 199.3% 20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도로점용료 징수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보면 평균 80억원에 못미치게 징수되던 도로 점용료 수입이 2015년에는 3배이상 징수하겠다는 계획으로 그동안 도로 점용 허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수년간 미징수 수입에 대한 소급징수 가능 여부 및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연도별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sup>28)</sup>>

(단위 : 백만원 / %)

구 분	평 균	2012년	2013년	‘14.9월
징 수 결 정 액	7,862	7,820	8,031	7,736
실 제 수 납 액	7,522	7,513	7,684	7,368
미 수 납 액	341	307	347	368

- 사용료수입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로 2014년에 1,154억원에서 23.17% 267억원이 증가한 1,42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4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5.9% 인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sup>28)</sup> 2014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p161 참조



## 2) 재산매각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의 하나로 세외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은 2014년에 5,788억원에서 △81.36% 4,709억원이 감소한 1,0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 지난 수년간 부족한 재정을 메꾸고자 송도 6·8공구('12년 8,094억원), 인천터미널('13년 9,000억원) 및 '14년<sup>29)</sup>에도 북항배후부지 등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하여 일시적·임시적 대응을 한 반면, 2015년부터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통상적인 매각 수입만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연, 도매시장 규모관련 국토부 승인 지연 등으로 롯데쇼핑과의 본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14년 본예산에 3,100억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9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예산에서 918억원만 남겨놓고 2,182억원은 감액하고, 2015년도 예산에 918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관부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07,897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2,595	회계과(p64)
시유재산 매각수입	5,096	회계과(p64)
근로자문화센터 매각	8,400	일자리정책과(p100)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91,800	농축산유통과(p101)
국민주택 부지 매각수입	6	건축계획과(p118)

<sup>29)</sup>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5,788억원)

-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 373억원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3,100억원
- 북항기부채납 준공업용지 746억원 등
-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 1,139억원
- 소래논현 사업지구 기부채납토지 256억원

- 지난 3월에 롯데쇼핑주식회사와 투자약정 체결시 금년 9.30일까지 본계약 체결 유효 기한으로 정했으나 그린벨트 미해제 등으로 금년 12. 22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 기한내 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와 2014년, 2015년에 예정된 매각 대금이 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근로자문화센터 매각 수입으로 8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가능 여부,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던 근로자문화센터를 매각할 경우 그동안 근로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재직자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인천시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 어학능력개발 등을 실시하여 오던 사업이 일순간에 중단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매각이 최선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100세대가 입주 가능한 근로자 임대아파트<sup>30)</sup>에 대한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문화센터 예산 및 운영 현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527쪽 ~ 528쪽) 참조

<sup>30)</sup> 임대아파트 규모

- 대지 : 3,480㎡(1,774평)      - 건물 : 2,464㎡(745평) [지하1층, 지상3층, 별관 지상2층]  
 - 동수 : 2개동(각11평)      - 입주가능인원 : 100세대 / 200명

### 3) 부담금

- 임시적세외수입중의 하나인 부담금은 2014년에 1,426억원에서 △ 17.84% 254억원 감소한 1,17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주요 감소 사유로는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 (주)한화외 1개사) 공사에 따른 일반부담금 230억원이 2014년에 편성·납부가 완료되어 2015년도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자인 (주)한화·화인파트너스로부터 도로 확장비용 230억원을 2014년 전액 징수하고도 대부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 예산편성·집행계획<sup>31)</sup>>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총액	2014년			2015	2016	'17이후
			예산	집행	잔액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L=1,370m B=30→40m	25,500	3,072	1	3,071	3,200	10,000	9,228

31) 2015년도 계속비사업조서 참조 예산서안 p967

#### 4) 기타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2014년에 2,023억원에서 △61.74% 1,249억원이 감소한 77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이는 금년에 지방소비세 보전분으로 1,55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앞(검토보고서 32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중 지방소비세는 2014년 2,236억원에서 2015년에는 2,688억원으로 452억원 증액된 반면, 2014년 기타수입인 지방소비세 보전분은 1551억원으로 차액이 1,099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제3항<sup>32)</sup>에 따라 인천시의 가중치가 수도권에 포함되어 2분의 1 또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타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sup>32)</sup>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 마. 지방교부세

-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정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편차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4년에 3,212억원에서 △9.89% 289억원 대폭 감속된 2,923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 이는 지난 2005년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2014년에 554억원에 달하던 분권교부세가 전액 감소함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경우 분권교부세 감소액(554억원)의 50%에도 못미치는 273억원만 보통교부세에서 증가되고 있어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2015년도 교부세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설명 및 대책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92,300	321,194	△28,894	△9.89
보 통 교 부 세	292,300	265,000	27,300	10.30
특 별 교 부 세	-	668	△668	△100.00
분 권 교 부 세	-	55,526	△55,526	△100.00

## 바. 보조금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0.86% 1,911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보조금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950,035	1,758,954	191,080	10.86
국 고 보 조 금	1,738,285	1,541,728	196,558	12.75
지역발전특별회계 보 조 금	132,449	113,528	18,921	16.67
기 금	79,300	103,698	△24,399	△23.53

-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조 5,417억원 규모에서 12.75% 1,966억원이 증가된 1조 7,383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기초생활보장급여 (2,041억원 → 1,678억원, △363억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2,346억원 → 3,477억원, 증 1,131억원)
-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429억원 → 300억원, △129억원)
-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89억원 → 483억원, 증 394억원)

등으로 이중 가장 크게 증가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연금법이 지난 2014.5.20일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년에는 1년치를 전액 반영하게 됨에 따라 48.2% 크게 상승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한 시의 재정압박도 가중되고 있음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1,135억원 규모에서 16.67% 189 억원이 증가된 1,324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억원 → 20억원, 증 2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7억원 → 53억원, 증 6억원)

·인천서구 ~ 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 (20억원 → 50억원, 증 30억원)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도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이어져 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사업 시급성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투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금은 전년도 1,037억원 규모에서 △23.53% 244억원이 감소된 793 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필수예방접종사업 (73억원 → 155억원, 증 82억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0억원 → 33억원, 신규 33억원)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0억원 → 51억원, 신규 51억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 (416억원 → 0억원, △416억원)

등으로 대부분 일시적·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비 매칭이 없거나 매칭 부담이 적은 사업이므로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확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 지방채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면사업의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2014년 발행규모가 8,412억 원에서 3.97% 334억원이 증액된 8,745억원으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함.
- 그동안 인천시의 경우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에 집중하여 왔으나, 2014년말 기준 3조 2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2015년부터는 그동안 아시아경기대회 등 특수 수요에 따른 한도초과 지방채 발생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를 줄이고자, 한도의 발행을 억제하고, 발행한도내 4건에 2,505억원만 발행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2014.11.26일)을 받았음

### < 지방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채계	874,514	841,160	33,354	3.97
차입금	-	195,000	△195,000	△100.00
정부자금채	-	15,000	△15,000	△100.00
금융기관채	-	170,000	△170,000	△100.00
지방공공자금채	-	10,000	△10,000	△100.00
지방채증권	874,514	646,160	228,354	35.34
모집공채	708,314	545,574	162,740	29.83
매출공채	166,200	100,586	65,614	65.23



- 또한 지방채 발행액중 81%을 차지하고 있는 모집공채 7,083억원은 이미 발행된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로 전환코자 하는 차환채이고,
- 실제로 2015년에 신규 발행하는 지방채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346억원),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86억원) 등 도시철도 매출공채 432억원 및 지역개발채권 1,230억원 등 1,66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와 같이 한도의 추가 발행은 중단한 반면, 한도내 신규 발행은 2014년 1,750억원 발행에서 2015년에는 43.14% 755억원이 증가된 2,505억원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채권은 채권 매입 기준이 타시도에 비해 낮아 리스·렌트 차량의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배에 가까운 84.96% 565억원이 증가한 1,230억원을 발행코자 하고 있음
- 이는 도시철도채권<sup>33)</sup> 및 지역개발채권<sup>34)</sup>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만기에 발행이율이 연 2.0%로 일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모집공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활용이 가능한 바, 고금리 차환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매출공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시의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다고 사료됨

3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채권은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2.0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용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부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지방채계	8,745	100.00	8,412	100.00	333	3.96
한도내 발행	2,505	28.64	1,750	20.80	755	43.14
신규발행	1,662	19.01	1,123	13.35	539	48.00
도시철도2호선	346	3.96	319	3.79	27	8.46
서울7호선 석남 연장	86	0.98	22	0.26	64	290.91
지역개발채권	1,230	14.07	665	7.91	565	84.96
일반차환	843	9.64	627	7.45	216	34.45
한도외 발행	-	0.00	2,647	31.47	△2,647	△100.00
고금리 차환	6,240	71.36	4,015	47.73	2,225	55.42

○ 한편 인천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최종예산액 대비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채무비율을 살펴 보면 2011년에 최종예산액 7조 2,658억원인 반면, 채무액은 2조 7,401 억원으로 채무비율은 37.71%에 달하였다가 2012년 35.09%, 2013년 35.65%로 다소 안정화 되다가, 다시 2014년말에는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37.04%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채무액 및 채무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기준 연평균 증가율
					예산기준	중기기준	
최종예산액	72,658	79,866	88,593	86,842	80,522	84,158	2.6
일반·특별	68,400	75,386	83,644	81,631	77,649	81,021	3.2
기 금	4,258	4,480	4,949	5,211	2,873	3,137	△9.4
채무액 <sup>35)</sup>	27,401	28,021	31,587	32,165	31,511	31,511	3.6
채무비율	37.71	35.09	35.65	37.04	39.13	37.4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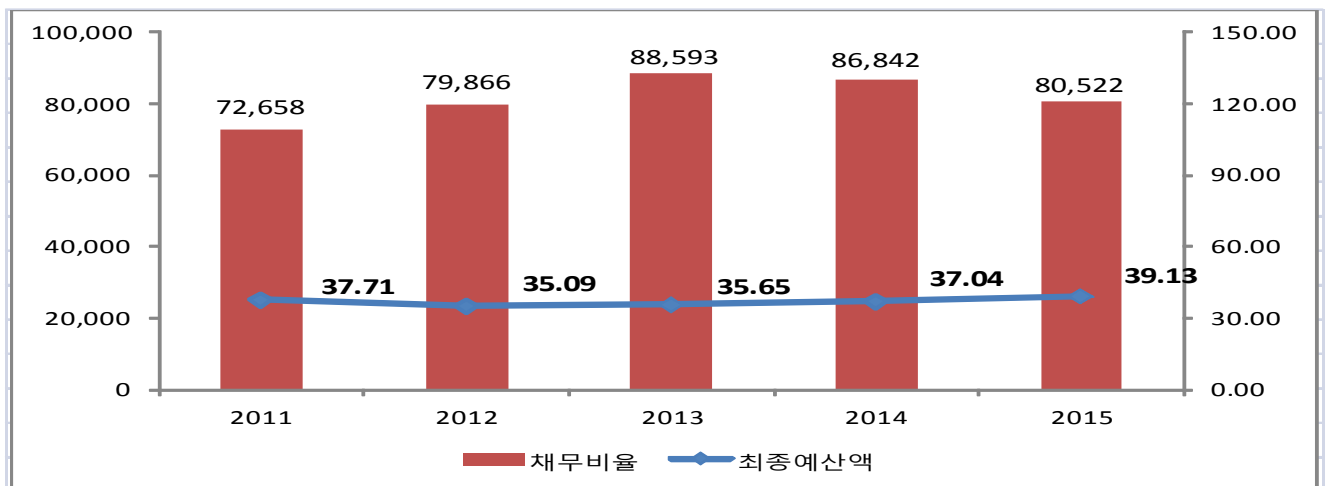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35) 2014.11.7일 제출한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에 의한 연도별 채무액

- 특히, 2015년에는 채무액은 전년에 비해 654억원 감소하지만 예산안 기준으로 예산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채무비율은 39.13%로 4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5년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37.44%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나,
- 채무액 합계액이 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 2015년도 재정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채무액 및 채무비율 추이>**

(단위 : 천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 3 ~ 6 (생략)

- 다른 한편으로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는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을 합해 1,662억원만을 발행하는 반면, 상환은 원금·이자를 합쳐 매년 4 ~ 5천억원에 달하여 채무비율이 2019년부터는 30%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2015년부터 매년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규모가 4천억원을 넘고 있어 시 재정운용 경직화로 지역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나, 서민생계나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

(연말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b>잔 액</b>	<b>31,511</b>	<b>29,876</b>	<b>27,756</b>	<b>25,215</b>	<b>22,364</b>
일반회계	10,424	9,357	7,952	6,540	5,148
A G	10,192	9,590	8,939	8,092	7,051
도시철도사업	1,903	1,930	1,697	1,584	1,210
하수도사업	981	786	605	454	316
지역개발기금	6,057	6,366	6,823	6,911	7,252
경제자유구역사업	1,954	1,847	1,740	1,634	1,387
<b>발 행</b>	<b>2,505</b>	<b>1,662</b>	<b>1,662</b>	<b>1,662</b>	<b>1,662</b>
일반회계	843	0	0	0	0
도시철도사업	432	357	184	85	0
지역개발기금	1,230	1,305	1,478	1,577	1,662
<b>상 환</b>	<b>4,443</b>	<b>4,286</b>	<b>4,700</b>	<b>4,994</b>	<b>5,261</b>
원금 상환	3,372	3,297	3,782	4,203	4,513
이자 상환	1,071	989	918	791	748
<b>예상 채무비율</b>	<b>37.4%</b>	<b>37.9%</b>	<b>36.3%</b>	<b>32.5%</b>	<b>29.1%</b>

※ 참고자료 - 지방채 조서(공사·공단 포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43쪽 ~ 57쪽) 참조

## 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6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3.47%, 1,099억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융금수입 등 보전수입등은 23.00% 272억원이 증가한 1,455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내부거래는 전년도 6,978억원 규모에서 △19.65% 1,371억원이 감소된 5,607억원으로 편성됨
- 내부거래 항목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1,767 → 871억원, △896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 전출금(1,367 → 650억원, △717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661 → 35억원, △626억원) 등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이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료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전출금 규모가 감소하였을 수도 있으나 시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업 진척도와 상관없이 지원규모가 축소될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6,195	816,133	△109,938	△13.47
보 전 수 입 등	145,517	118,311	27,206	23.00
순 세 계 잉 여 금	144,985	117,897	27,089	22.98
일 반 회 계	1,564	5,340	△3,776	△70.71
특 별 회 계	143,421	112,557	30,864	27.42
전 년 도 이 월 금	-	1	△1	△100.00
융 자 금 원 금 수 입	532	413	119	28.74
내 부 거 래	560,678	697,822	△137,144	△19.65
전 입 금	386,320	549,972	△163,652	△29.76
예 탁 금 및 예 수 금	174,358	147,850	26,508	17.93

- 다만 전입금중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2015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는 2014년 688억원에서 1205억원으로 71.5%인 517억원이 증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관련법상에 무상<sup>36)</sup>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sup>37)</sup>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금년도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인천시와 교육청 예산편성액(제1회 추경예산 기준)이 157억원이 불일치함에도 금번 2회 추경에도 일치시키지 않고 편성함은 물론, 2015년에는 무려 746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교육청 전출액 459억원중 2014년 미전출액을 제외하면 실제 2015년도에 필요경비 1,205억원의 25%인 302억원만 전출하고 있어 불일치 금액이 903억원에 달하고 있음

**< 누리과정관련 전출·입금 차액발생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본예산(b)	합계 (a+b)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a)		
인 천 시 세 입 예 산 ( A )	68,769	83,941	83,941	120,519	204,460
교 육 청 세 출 예 산 ( B )	83,941	68,234	68,234	45,879 <sup>38)</sup>	114,113
불 일 치 액 ( A - B )	$\Delta 15,172$	15,707	15,707	74,640	90,347
	( $\Delta 22.06$ )	(18.71)	(18.71)	(61.93)	(44.19)

36)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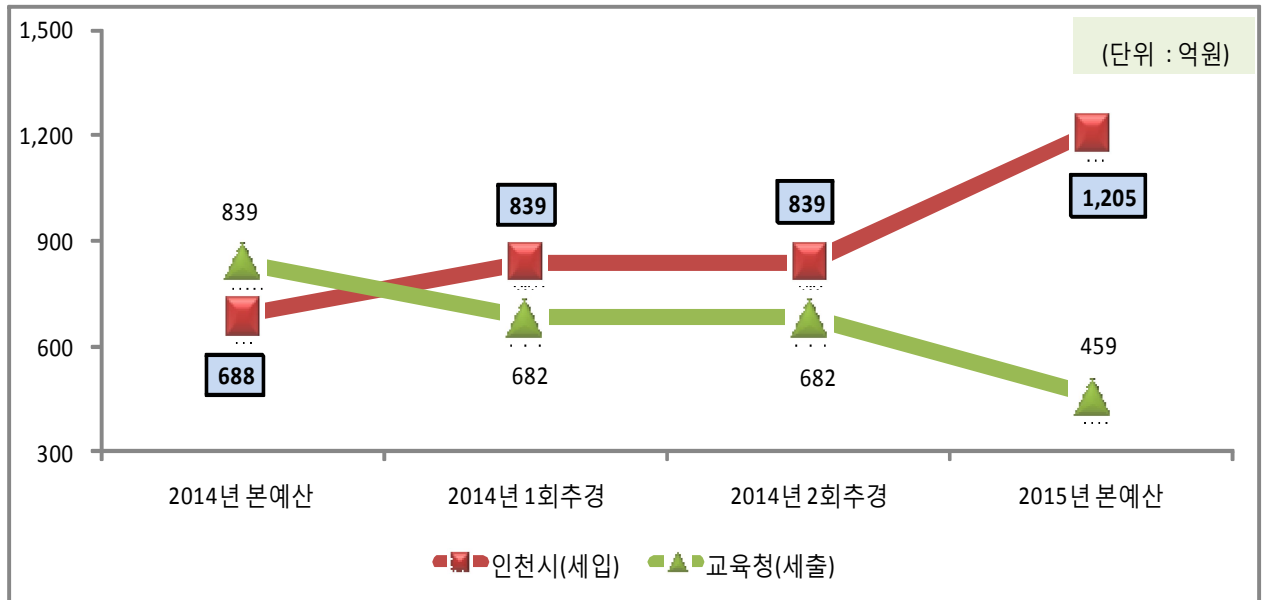
3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38) 45,879백만원 = 2014년도 미전출액(15,707백만원) + 2015년도 전출분(30,17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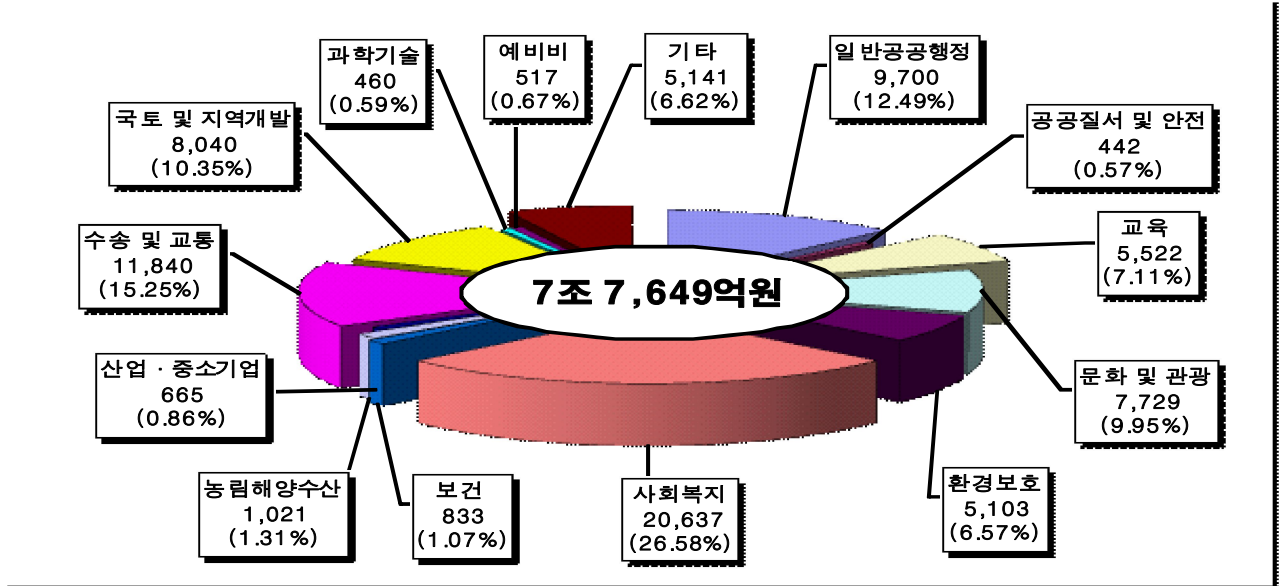
- 현재 상황에서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수입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해결 방안 및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누리과정관련 전출·입금 차액발생 현황 >



## 4. 세출예산

### 가. 기능별



###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계	7,764,872	100.00	7,837,282	100.00	△72,410	△0.92
일반공공행정	969,967	12.49	1,062,139	13.55	△92,172	△8.68
공공질서및안전	44,151	0.57	32,736	0.42	11,415	34.87
교육	552,232	7.11	525,965	6.71	26,266	4.99
문화 및 관광	772,869	9.95	752,695	9.60	20,174	2.68
환경 보호	510,261	6.57	518,691	6.62	△8,430	△1.63
사회 복지	2,063,686	26.58	1,857,246	23.70	206,440	11.12
보 건	83,288	1.07	100,561	1.28	△17,273	△17.18
농림해양수산	102,090	1.31	146,515	1.87	△44,425	△30.32
산업·중소기업	66,508	0.86	100,015	1.28	△33,507	△33.50
수송 및 교통	1,183,999	15.25	1,274,354	16.26	△90,356	△7.09
국토및지역개발	804,001	10.35	886,121	11.31	△82,121	△9.27
과 학 기 술	45,997	0.59	40,700	0.52	5,297	13.02
예 비 비	51,704	0.67	55,040	0.70	△3,335	△6.06
기 타	514,119	6.62	484,503	6.18	29,616	6.11



-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0.92% 724억 원 감소된 7조 7,649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6.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송및교통 15.25%, 일반공공행정 12.49%, 국토및지역개발 10.35%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1) 일반공공행정분야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4년에 1조 621억원 규모에서 △8.68% 922억원이 감소된 9,7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4년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146억원 감소와 군구 조정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1,063억원 감액되었는 바,
- 이는 시의 재정난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구에 재정지원의 일부만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군구의 재정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공공질서및안전분야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014년에 327억원 규모에서 34.87% 114억원 대폭 증가한 44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첨단구조장비 보강,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더불어 시의 소방력 확충을 위한 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 타 분야에 비해 대폭 증가되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 활용측면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교육분야

- **교육분야**는 전년도에 5,260억원 규모에서 4.99% 263억원 소폭 증가한 5,52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에 지원해야 하는 인천대 전출금 300억원중 150억원을 빼고 50%만 우선 지원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중 2013년도 정산분 등 482억원이 증액되어 소폭 증가한 사항으로
- 교육청도 최근 수년째 재원부족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바, 미전출된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문화및관광분야

- 시 재정의 10%정도를 차지하는 **문화및관광분야**는 2014년에 7,527억원 규모에서 2.68% 202억원 소폭 증가한 7,72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로 경기장 건설비 및 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규모 확대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5) 환경보호분야

- **환경보호분야**는 2014년도에 5,187억원 규모에서 △1.63% 84억원 소폭 감소한 5,103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청사매각이 2014년에 완료되어 상수도부문이 감소된 것에 기인함

## 6) 사회복지분야

- 시 재정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2014년에 1조 8,572억원 규모에서 11.12% 2,064억원 증가한 2조 63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부문 4.89% 270억원, 취약계층지원부문 8.75% 132억원, 보육·가족및여성부문 5.96% 336억원, 노인·청소년부문 32.93% 1,416억원 등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노농부문 △22.86% 63억원, 사회복지일반부문 △9.06% 32억원 등은 감소함
- 주요 증액사유로는 누리과정 운영 517억원(688 → 1,205억원), 기초연금 지급 1,401억원(2,901 → 4,302억원)이 증가하여 세출규모가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기초연금 역시 군구별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만 대폭 증액되었음
- 이처럼 대규모 정부 의존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 사업들은 대부분 2015년도 예산편성시 일정부분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7) 보건분야

- 보건분야는 2014년에 1,006억원 규모에서 △17.18% 173억원 감소한 83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15 → 4억원),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8.5억원(14 → 5.5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 116억원(149 → 33억원) 대폭 삭감되었는데, 2015년에 편성된 33억원도 전액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는 전액 삭감되었는 바, 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8) 농림해양수산분야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에 1,465억원 규모에서 다소 큰 폭인 △ 30.32% 444억원 감소한 1,02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지연 등으로 늦어지면서 2014년에 521억원 편성되었던 것이 2015년에는 50억원만 편성되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장 이전은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과도 직결되고 있어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및 매각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9) 산업·중소기업분야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4년에 1,000억원 규모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인 △33.50% 335억원 감소한 66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물포스마트터워 건립공사(204억원)가 2014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규모가 29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45억원 감소되었고, 계속비 사업인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가 49억원에서 38억원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는 34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각각 11억원, 16억원 감소되어 다소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이중 건설사업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투자규모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규모는 전년에 비해 18%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0) 수송및교통분야

- 수송및교통분야는 전년에 1조 2,744억원 규모에서 △7.09% 904억원 감소한 1조 1,84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로부문 △19.06% 370억원, 도시철도부문 △3.50% 160억원, 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 △6.00% 373억원 등이 감소되었음.

- 주요 감소 사업으로는

-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186억원 → 35억원 (△151억원)
- 도로시설물 정비 142억원 → 64억원 (△78억원)
- 매트로 운영지원 351억원 → 315억원 (△36억원)
- 택시운송사업지원 462억원 → 383억원 (△79억원)
- 철도운영지원 168억원 → 66억원 (△102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2014년 400억원(2014년 제1회 추경 700억원)보다 440억원 증가된 8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특히 2011년 543억원 지원후 2012년 433억원으로 감소된후 2013년부터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평균 11.5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매년 지원금은 큰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교통불편 신고는 크게 줄지 않고 수송분담율<sup>39)</sup>은 감소추세에 있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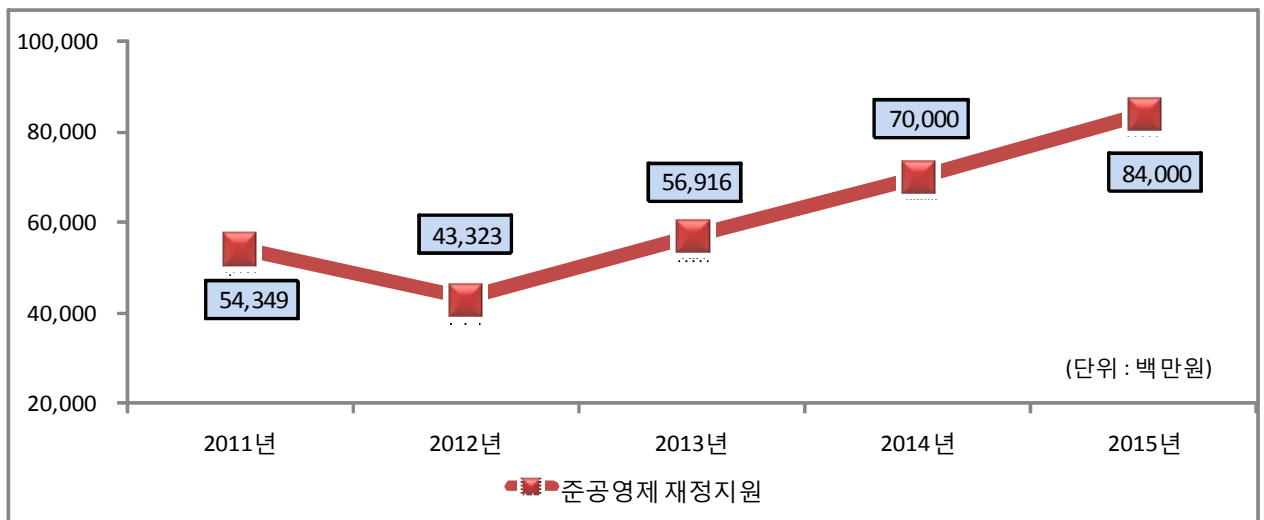
<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준공영제 재정지원	54,349	43,323	56,916	70,000	84,000	11.50

∴ 2014년은 제1회 추경예산액 기준(8월까지 집행액 47,238백만원)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연도별 추이 >



39) 시정 기본현황·통계 참조(2014.11월)

[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 ]

(단위 : 통행/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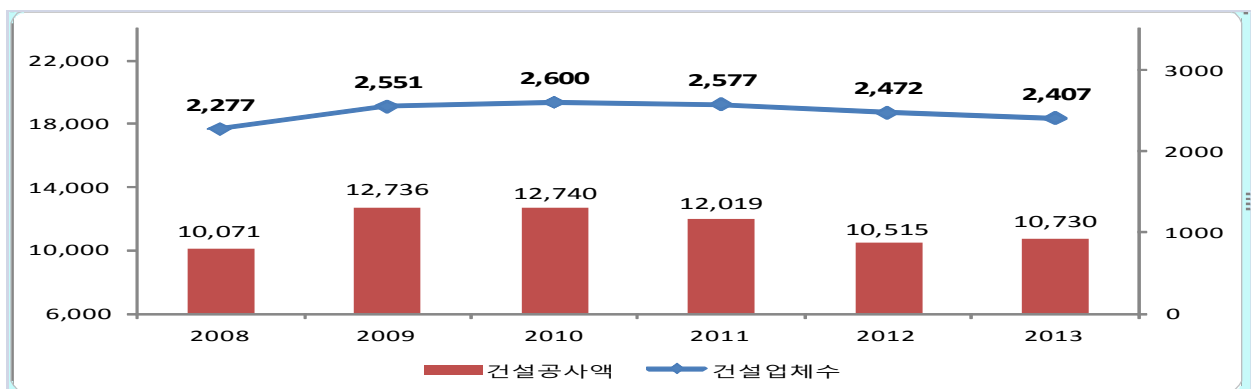
구분	계	승용차	버스	지하철/철도	택시	기타	
2010년 (전수화)	통행량	5,712,133	2,571,343	<b>1,700,757</b>	592,503	441,654	405,876
	분담률	100.0	45.0	<b>29.8</b>	10.4	7.7	7.1
2011년 (현행화)	통행량	5,867,390	2,630,012	<b>1,738,332</b>	642,789	441,168	415,089
	분담률	100.0	44.8	<b>29.6</b>	11.0	7.5	7.1
2012년 (현행화)	통행량	5,943,920	2,654,702	<b>1,701,992</b>	722,378	438,397	426,451
	분담률	100.0	44.7	<b>28.6</b>	12.1	7.4	7.2
2015년 (장래예측)	통행량	6,309,349	2,872,497	<b>1,703,304</b>	900,460	413,331	419,758
	분담률	100.0	45.5	<b>27.0</b>	14.3	6.5	6.7

## 1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전년에 8,861억원 규모에서 △9.27% 821억원 감소한 8,04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수자원부문은 19.44% 61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역및도시부문은 △10.33% 883억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18억원 → 48억원 (30억원)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699억원 → 11억원 (△688억원)
  - 도시재생사업 추진 120억원 → 30억원 (△90억원)
  - 녹지조경사업 88억원 → 38억원 (△50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더딘 회복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의 연기나 중단으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는 지난 10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6년간 인천지역 건설업 동향’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건설업체수는 2010년 2,600개소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3년의 인천지역의 건설공사액도 2010년의 12조 7,400억원의 84.22% 수준인 10조 7,3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최근 6년간 인천지역 건설업 추이>

(단위 : 십억원 / 개)



- 이와 같이 인천시에서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로 지역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6년간 인천지역 건설업 현황 >

(단위: 개 / 십억원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건설업체수	62,805	64,854	65,330	65,469	65,249	65,679
	건설공사액	211,556	217,021	214,530	224,229	232,503	242,275
인천	건설업체수	2,277	2,551	2,600	2,577	2,472	2,407
	(구성비)	(3.6)	(3.9)	(4.0)	(3.9)	(3.8)	(3.7)
	건설공사액	10,071	12,736	12,740	12,019	10,515	10,730
	구성비	(4.8)	(5.9)	(5.9)	(5.4)	(4.5)	(4.4)

12) 과학기술분야

- 과학기술분야는 2014년에 407억원 규모에서 13.02% 53억원 증가된 46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30억원(296 → 266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2013.4월 협약에 따라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확대조성사업 정상화 자금 지원을 위해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112억원을 신규 지원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됨
- 매년 100억원씩 400억원을 출연 예정으로 대규모 운영비가 출연되고 있는바, 출연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조직별

- 조직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대변인실 △24.99%, 도시디자인추진단 △65.43%, 국제협력관실 △30.97%, 소통기획관실 △22.01%, 경제수도추진본부 △29.85%, 문화관광체육국 △17.90% 및 도시계획국 △29.89%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 감사관실 8.31%, 교육기획관실 4.99%, 여성가족국 16.07%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10.13%, 소방안전본부 43.89% 등은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부서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경상경비 등의 의무 절감 등으로 부서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전년대비 조직별 예산 및 구성비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분비	구성비	증감율	증감율
총 계	7,764,872	100.00	7,837,282	100.00	△72,410	△0.92
의 회 사 무 처	11,316	0.15	11,677	0.15	△361	△3.09
대 변 인 실	8,234	0.11	10,978	0.14	△2,743	△24.99
감 사 관 실	478	0.01	442	0.01	37	8.31
교 육 기 획 관 실	552,353	7.11	526,084	6.71	26,270	4.99
도시디자인추진단	1,398	0.02	4,043	0.05	△2,645	△65.43
규 제 개 혁 추 진 단	79	0.00	15	0.00	64	434.41
국 제 협 력 관 실	6,356	0.08	9,208	0.12	△2,852	△30.97
소 통 기 획 관 실	225	0.00	289	0.00	△64	△22.01

(단위 : 백만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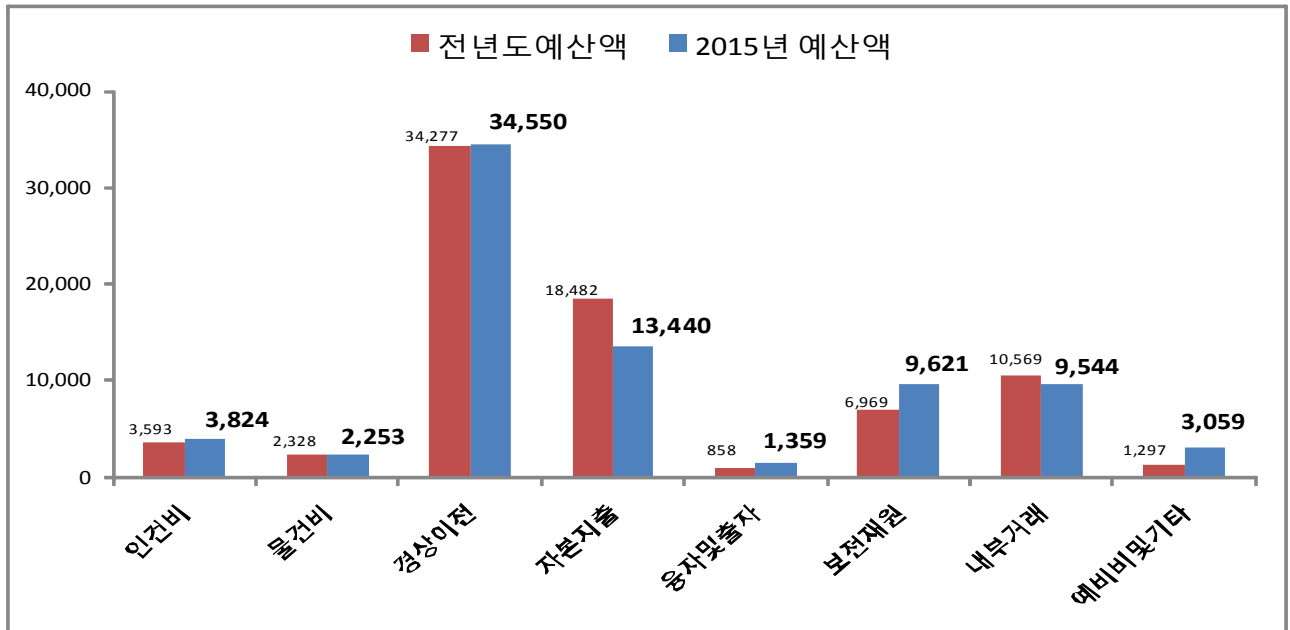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기 획 관 리 실	1,026,665	13.22	1,086,622	13.86	△59,957	△5.52
경 제수 도추진 본부	192,721	2.48	274,719	3.51	△81,999	△29.85
안 전 행 정 국	156,991	2.02	179,024	2.28	△22,033	△12.31
보 건 복 지 국	862,067	11.10	830,029	10.59	32,038	3.86
여 성 가 족 국	1,173,371	15.11	1,010,891	12.90	162,481	16.07
건 설 교 통 국	635,680	8.19	701,245	8.95	△65,564	△9.35
문 화 관 광 체 육 국	133,607	1.72	162,730	2.08	△29,123	△17.90
도 시 계 획 국	167,404	2.16	238,789	3.05	△71,385	△29.89
환 경 녹 지 국	372,102	4.79	359,388	4.59	12,714	3.54
항 만 공 항 해 양 국	186,647	2.40	190,507	2.43	△3,859	△2.03
아 시 아 경 기 지 원 본 부	616,355	7.94	559,671	7.14	56,684	10.13
소 방 안 전 본 부	57,994	0.75	40,305	0.51	17,690	43.89
1 2 개 직 속 기 관	161,301	2.08	155,752	1.99	5,549	3.56
1 8 개 사 업 소	861,893	11.10	903,231	11.52	△41,338	△4.58
경 제 자 유 구 역 청	579,635	7.46	581,646	7.42	△2,011	△0.35

##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3.23%, 자본지출 △27.28% 내부거래 △9.70% 감소한 반면, 인건비 6.42%, 용자및출자 58.44%, 보전재원 38.05% 및 예비비및기타 135.89% 등은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현황>

(단위 : 억원)



(단위 : 백만원 /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총계	7,764,872	100.00	7,837,282	100.00	△72,410	△0.92
인건비	382,366	4.92	359,302	4.58	23,064	6.42
물건비	225,284	2.90	232,799	2.97	△7,515	△3.23
경상이전	3,455,015	44.50	3,427,682	43.74	27,332	0.80
자본지출	1,343,955	17.31	1,848,190	23.58	△504,235	△27.28
용자 및 출자	135,936	1.75	85,794	1.09	50,142	58.44
보전재원	962,052	12.39	696,899	8.89	265,153	38.05
내부거래	954,364	12.29	1,056,936	13.49	△102,573	△9.70
예비비 및 기타	305,900	3.94	129,680	1.65	176,221	135.89

## 1) 인건비

- 인천시 재정의 약 5%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전년도에 3,593억원 규모에서 6.42% 231억원 증가한 3,824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매년 증가되는 공무원 정원 및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만큼 적절한 인력운용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없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물건비

-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된 물건비는 전년도 2,328억원 규모에서 △3.23% 75억원이 감액된 2,25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일반운영비 △5.15%, 업무추진비 △6.09%, 의회비 △7.17%, 연구개발비 △23.84%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긴축재정으로 매년 일정비율 삭감 편성하고 있어 자칫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및 감소 사유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25,284	232,799	△7,515	△3.23
일반운영비	109,495	115,445	△5,949	△5.15
여비	6,377	6,368	10	0.15
업무추진비	3,651	3,888	△237	△6.09
직무수행경비	22,176	21,218	958	4.52
의회비	2,822	3,040	△218	△7.17
재료비	71,815	71,093	722	1.02
연구개발비	8,947	11,748	△2,801	△23.84

### 3) 경상이전

- 인천시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이전은 2014년에 3조 4,277억원에서 0.8% 273억원이 증가한 3조 4,55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출연금 678억원, 차입금이자상환 230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민간이전 200억원, 자치단체등이전 926억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경상이전 경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3,455,015	3,427,682	27,332	0.80
일 반 보 상 금	70,843	66,099	4,744	7.18
이주및재해보상금	-	13	△13	△100.00
포 상 금	18,581	19,813	△1,232	△6.22
연 금 부 담 금 등	72,050	66,471	5,578	8.39
배 상 금 등	282	371	△89	△24.03
출 연 금	120,287	188,063	△67,776	△36.04
민 간 이 전	839,112	819,069	20,043	2.45
자치단체등이전	2,208,991	2,116,417	92,573	4.37
전 출 금	11,416	10,549	867	8.22
국 외 이 전	3,519	7,866	△4,347	△55.27
차입금이자상환	109,935	132,951	△23,015	△17.31

- 이 중 출연금은 전년에 1,881억원에서 다소 대폭인 △36.04% 678억원이 감소된 1,20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 지역상생발전기금<sup>40)</sup> 174억원 → 237억원 (증 63억원)
  -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12억원 (신규 112억원)
 등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반면,

40)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에 따라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의 35%를 출연토록 규정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300억원 → 150억원 (△150억원)
-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641억원 → 0억원 (△641억원)
-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96억원 → 266억원 (△30억원) 등은  
사업 종료로 전액 감소하거나 대폭 삭감되었음

- 하지만 인천대 지원비(△150억), 아시아조직위 출연금(△641억원)을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113억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은 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출연금의 경우 출연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3년간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및 사업계획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301쪽 ~ 328쪽 참조)

- 한편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41)」 따르면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41)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출연금) 인천광역시장은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예산서 제출)

- ① 제3조에 따라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뿐만 아니라 의 회에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출시기도 시 예산안의 부속서 류로 관련법<sup>42)</sup>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인 2014.11.11 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 일부 기관에서는 제출시기가 열흘이상 지연 제출되고 있어 의 회의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제출여부	제출시기	제출여부	제출시기
총 14개 기관	대상 13기관중 11개 기관 제출			
(재) 인천 발전 연구원	○	11.19	○	11.19
(재) 인천 국제 교류 재 단	○	11.14	○	11.14
(재) 인천 인재 육성 재 단	○	11.26	○	11.26
인천 광역 시 의 료 원	○	11.24	○	11.24
인천 광역 시 의 료 관 광 재 단	○	11.12	○	11.12
(재) 인천 광역 시 여 성 가 족 재 단	○	11.17	○	11.17
(재) 인천 문 화 재 단	○	11.19	○	11.19
(재) 인천 광역 시 강 화 고 려 역 사 재 단	○	11.19	○	11.19
(재) 인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	11.12	○	11.12
인천 신 용 보 증 재 단	○	11.14	○	11.14
(재) 인천 테 크 노 파 크	○	11.12	○	11.12
(재) 인천 정 보 산 업 진 흥 원	○	11.12	○	11.12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	11.25	○	11.25
인천 유 시 티 ( 주 )	2015년 보조 또는 출연금 없음			

42)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쪽)
교육기획관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15,000	30,000	△15,000	202
"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793	824	△30	202
"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500	500	0	202
국제협력관실	(재)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158	2,110	48	208
정책기획관실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5,200	4,000	1,200	21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200	100	100	216
"	한국지역진흥재단 연구사업 지원	91	0	91	216
예산담당관실	지역상생발전기금	23,718	17,400	6,318	222
보건정책과	진료수가 차액보전	79	98	△19	458
"	무상진료사업	91	123	△32	458
"	백령병원 운영지원	630	700	△70	458
"	의료원 운영지원	970	970	0	458
"	가정간호의료급여수급자지원	6	7	△1	458
"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741	1,741	0	458
"	행려환자 및 외국인근로자 진료비(외래) 지원	47	65	△18	458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225	250	△25	458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960	674	286	458
"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550	1,400	△850	461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1,350	1,350	0	487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500	900	△400	539
"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2,250	0	2,250	540
"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운영	130	300	△170	545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800	1,653	△853	545
문화재과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및 사업비	500	530	△30	556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쪽)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1,100	1,190	△90	683
"	지역SW산업 성장지원	760	0	760	684
"	지역SW융합 클러스터 구축(국가 직접지원)	1,000	0	1,000	684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3,402	2,073	1,329	684
"	인천N방송국 운영	136	300	△164	684
"	인천N방송 시스템 운영	464	470	△6	684
"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0	750	△550	685
"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1,200	0	11,200	685
"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6,600	29,600	△3,000	685
"	인천 IT명품인재양성사업지원(연세대)	1,000	500	500	685
"	인천 IT명품인재양성사업지원(한국뉴욕주립대)	180	180	0	685
생활경제과	햇살론사업	2,000	3,200	△1,200	692
"	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	130	0	130	692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57	57	0	696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11	250	△51	696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800	800	0	696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채원 출연	1,800	1,800	0	696
"	중견사다리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43	100	△57	697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200	0	200	698
"	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30	130	0	698
"	수출지원단 지원	60	60	0	698
"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246	246	0	698
"	품질우수제품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73	0	73	700
"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지원	100	100	0	701
"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00	200	0	702
"	인천디자인센터 운영	330	323	7	702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330	2,185	△855	703
일자리정책과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1,840	1,500	340	707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출연금	5,000	5,000	0	77
"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비	2,100	2,000	100	77

○ 한편 민간이전 관련예산중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차보전금 등은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각각 14.37%, 23.91%, 57.03%, 11.71% 등으로 10% 이상씩 대폭 감액 편성되었으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4.89%, 운수업계보조금 16.02% 등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sup>43)</sup>는 예산과목 보완 필요에 따라 편성기준 변경으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운수업계보조금은 2014년에 2,392억원 규모에서 16.02% 383억원이 증가된 2,775억원으로 편성됨

<민간이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민 간 이 전	839,112	819,069	20,043	2.45
의 료 및 구 료 비	316	369	△53	△14.37
민 간 경 상 보 조 금	63,407	83,336	△19,928	△23.9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131	2,853	3,278	114.89
민 간 행 사 보 조 금	2,444	5,687	△3,243	△57.03
민 간 위 탁 금	444,022	440,401	3,620	0.82
보 험 금	7	0	7	순증
연 금 지 급 금	582	534	48	8.95
이 차 보 전 금	26,135	29,600	△3,465	△11.71
운 수 업 계 보 조 금	277,475	239,151	38,323	16.0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139	6,950	189	2.72

4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014.7.30)으로 2015년부터 예산과목 신설

○ 민간이전경비중 가장 큰 199억원의 감소를 보인 민간경상보조금은 2014년 833억원에서 △23.91% 감소한 63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기도 하였겠지만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sup>44)</sup>됨에 따라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매년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307-03)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전액 삭감 처리되고, 대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회단체) 지원(예산서안 p256)’ 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sup>45)</sup>에 따르면 공모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아직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최근 3년간 한도액 및 편성액 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121쪽 ~ 125쪽) 참조

4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2014.5.28 본조신설(시행일 2015.1.1)

① ~ ③ (생략)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⑤ (생략)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5)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4.5.28 본조신설(시행일 2015.1.1)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운수업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4년 40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배이상 증가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반면 대중교통수단중 하나인 택시의 교통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은 금년의 50억원 규모에서 △70.25% 35억원이 삭감되어 15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택시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던 운전자 장려금(건당 100원) 지급을 카드이용율 목표인 60%를 상회하여 중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의 교통분담률이 지난 2010년 7.7%, 2011년 7.5%, 2012년 7.4%에서 2015년에는 6.5%으로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택시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같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시 재정의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단체등이전 경비는 2014년에 2조 1,164억원 규모에서 4.37% 926억원 증가된 2조 2,090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군·구 조정교부금 3개월분인 1,315억원을 미반영한 반면, 누리과정 517억원(688 → 1205억원), 기초연금 1,401억원(2,901 → 4,302억원) 등이 대폭 증가하여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4) 자본지출

- 건설 경기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자본지출은 2015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1조 8,482억원 규모에서 4분의 1이 넘는 27.28% 5,042억원이 감소한 1조 3,43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금년까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으로 다소나마 유지되던 시설비가 2015년에는 대폭 감소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바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본지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343,945	1,848,190	△504,235	△27.28
시설비및부대비	880,274	1,281,782	△401,509	△31.32
민간자본이전	70,816	47,674	23,142	48.5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40,532	442,883	△102,351	△23.11
공기업자본전출금	4,426	4,900	△474	△9.67
자산취득비	30,831	37,495	△6,664	△17.77
기타자본이전	17,076	33,456	△16,380	△48.96

## 5) 용자및출자

- 용자 및 출자 부분은 전년도 858억원에서 58.44% 501억원이 증가한 1,35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하는 출자금은 당초 편성액보다 192억원이 감소한 366억원 인 반면,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은 당초 3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694억원이 증가한 994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용자 및 출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35,936	85,794	50,142	58.44
용자금	99,361	30,000	69,361	231.20
출자금	36,575	55,794	△19,219	△34.45

- 용자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로 인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의 용자금이 2014년에 300억원에서 2015년에는 3배인 900억원(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용자금)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음

## 6)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 1,297억원에서 배가 넘는 135.89% 1,762억원이 증가되어 3,059억원으로 편성됨

### <예비비 및 기타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305,900	129,680	176,221	135.89
예 비 비	157,603	127,758	29,845	23.36
반 환 금 기 타	148,297	1,922	146,375	7616.51

- 이중 예비비는 전년보다 23.36% 298억원이 증가된 1,576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 반환금기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5억원 감소한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외국인 임대용지 금액정산 196억원과 재미동포타운 계약해제에 따른 토지대금 반환으로 1,27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대폭 증액되었음
- 이는 2012년부터 시작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그동안 분양과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라. 재정 투·융자사업

### □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재원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 총사업비가 40억원이상 신규사업, 2개이상 시·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한 예산<sup>46)</sup>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sup>47)</sup>에 규정되어 있음.

### □ 2015년도 투·융자사업 심사는

- 중앙심사 18건, 자체심사 30건 등 총 48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시비지원이 없는 구 자체사업 6건과 재검토로 인한 중복심사 5건을 제외한 37건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적정 3건, 조건부 29건 및 재검토 5건으로 심사되었음.

4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47)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투융자 심사결과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적 정			조 건 부			재 검 토		
	대상	예산 반영	비율	대상	예산 반영	비율	대상	예산 반영	비율	대상	예산 반영	비율
계	37	15	35.7	3	3	100.0	29	12	41.4	5	-	0.0
중앙심사	14	1	7.1	-	-	-	9	1	11.1	5	-	0.0
자체심사	23	14	60.9	3	3	100.0	20	11	55.0	0	-	0.0

※ 자체심사중 시비 지원없는 구사업 6건 및 중복심사 사업 5건(중앙 4 / 자체 1)은 제외

- 총 37건의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전체 37건중 8.1%인 3건만 사업을 추진해도 적정하다는 심사되고 나머지 91.9%인 34건(조건부 29 / 재검토 5건)은 적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14개 중앙심사 대상 사업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사업 전무한 실정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그에 따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건부로 결과가 나온 사업들은 대상사업의 78.4%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2건의 사업은 2015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예정으로 있어, 심사결과인 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5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355쪽 ~ 363쪽) 참조

## 마. 계속비사업

### □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 사업은

- 일반회계 20건, 공기업특별회계 40건, 기타특별회계 7건으로 총 67건으로 지난해 75건보다 8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총사업비 변경	투자계획 변경	신규	변동없음
계	67	12	46	6	3
일 반 회 계	20	2	16	2	-
특 별 회 계	47	10	30	4	3
공기업특별회계	40	7	26	4	3
기타특별회계	7	3	4	-	-

- 이중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교산천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등 2건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과 2016년 2개년에 걸쳐 20억원과 80억원이 투입되어 총사업비 100억원인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1단계) 용역 등 4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년간 지속되는 계속비사업을 새로이 시작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총사업비 변경 사업은 일반회계 2건, 공기업특별회계 7건 및 기타 특별회계 3건 등 총 12건으로 일부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도 있으나 일부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비 증가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별 심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투자계획(총사업비 포함) 변경이 없는 사업은 3건에 불과하고 계획이 변경되는 사업은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업(총사업비 변경 포함)은 일반회계 18건 등 총 58건으로 전체 계속비사업의 86.6%에 달하고 있음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이와 관련하여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인해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미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채용부족 등의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운용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속비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주요 현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365쪽 ~ 386쪽) 참조

### < 계속비사업 주요현황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도 예산액	'15년 계획액		변경사유	예산안 (쪽)
			당초	변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9,100	1,521	10,000	2,000	투자계획 변경	967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306,000	1,220	108,923	5,000	투자계획 변경	967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10,291	3,269	3,533	3,768	투자계획 변경	967
인천가족공원 조성(2단계)	52,796	7,877	7,730	6,000	총사업비 투자계획 및 변경	967
인천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 개설	56,360	6,380	15,546	13,907	총사업비 투자계획 및 변경	967
강화 대산~당산간 도로개설	42,600	4,344	10,000	4,286	투자계획 변경	967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25,500	3,072	3,000	3,200	투자계획 변경	967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44,310	-	31,195	2,800	투자계획 변경	967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43,300	500	23,816	20,962	투자계획 변경	967
검단산업단지~검단 IC간 도로 개설	41,100	500	14,510	6,957	투자계획 변경	967
봉수대길 왕길 사거리 지하차 도 건설	27,100	500	18,010	7,838	투자계획 변경	967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8,687	1,000	6,300	1,500	투자계획 변경	967
상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7,648	4,367	13,378	5,000	투자계획 변경	968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18,951	1,784	8,115	4,817	투자계획 변경	968
고향의강 선도사업(계산천)	13,805	1,205	7,677	372	투자계획 변경	968
남동유수지친수공간 조성사업	24,000	2,132	7,003	5,758	투자계획 변경	968
선행천(2단계) 수해상습지 개 선사업	16,341	3,929	7,707	3,340	투자계획 변경	968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900	600	7,050	200	투자계획 변경	968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148	-	신규	800	신규	968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수립용역	813	-	신규	203	신규	968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도 예산액	'15년 계획액		비 고 (변경내역)	예산안 (쪽)
			당초	변경		
강화군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52,900	-	3,184	-	투자계획 변경	417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28,321	3,962	15,749	8,596	투자계획 변경	417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6,190	-	1,270	2,29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417
부평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39,400	8,000	21,539	6,200	투자계획 변경	417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15,540	856	8,698	4,698	투자계획 변경	417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4,910	382	1,811	1,384	투자계획 변경	417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28,300	2,000	13,000	4,235	투자계획 변경	417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공사	14,900	1,500	13,400	2,310	투자계획 변경	418
공촌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47,779	1,692	23,321	6,655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418
남동, 수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33,500	1,360	16,070	-	투자계획 변경	418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	10,121	2,940	2,000	1,404	투자계획 변경	418
중부지역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	1,800	927	889	273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418
북부지역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	2,067	937	916	45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418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9,249	924	2,123	1,130	투자계획 변경	171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대행사업)	73,005	7,300	44,157	20,000	투자계획 변경	171
송도 6,8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4,251	425	1,063	684	투자계획 변경	171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1단계) 용역	10,000	-	신규	2,000	신규	171
송도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13~15년도)	5,633	783	1,500	1,35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171
송도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13~15년도)	1,109	209	360	360	변동없음	171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395,404	143,484	156,881	72,100	투자계획 변경	171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93,000	37,300	36,413	36,413	변동없음	171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53,400	25,030	25,520	2,000	투자계획 변경	171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2공구 건설공사	67,600	28,730	36,020	5,000	투자계획 변경	172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4공구 건설공사	71,400	20,900	50,550	3,000	투자계획 변경	172
엠코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	6,944	2,009	4,935	4,935	투자계획 변경	172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도 예산액	'15년 계획액		비 고 (변경내역)	예산안 (쪽)
			당초	변경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44,200	-	신규	2,300	신규	172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 영향조사 용역(5단계)	6,000	600	1,200	1,200	변동없음	172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피해영향 조사 및 위수탁사업비	10,000	-	5,000	1,000	투자계획 변경	172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 순환시설 설치	60,634	9,664	30,916	7,00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172
송도하수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	28,100	14,770	5,000	3,000	투자계획 변경	172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 하시설 설치공사	49,200	594	11,300	3,170	투자계획 변경	172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2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5,644	-	신규	602	신규	173
첨단산업 클러스터단지 1,2,3호 완충녹지, 5호연결녹지 조성공사	2,941	-	신규	2,158	신규	173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주변 기반시설사업	10,130	1,270	5,000	2,056	투자계획 변경	173
왕산요트경기장 건설	16,708	5,708	-	-	투자계획 변경 (2015년 이월)	173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 설공사	17,776	-	-	-	투자계획 변경 (2015년 이월)	173
잠진도 ~ 무의도간 연도교 건 설공사	58,262	-	13,415	7,10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173
용유 ~ 잠진도간 제방도로 확 장공사	2,278	67	1,823	-	투자계획 변경	173
큰무리마을 ~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13,500	1,800	7,600	3,000	투자계획 변경	173
을왕해수욕장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3,900	225	2,000	2,036	투자계획 변경	173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총액 (변경액)	'14년도 예산액	'15년 계획액		비 고 (변경내역)	예산안 (쪽)
			당초	변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39,491	6,171	-	29,15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1017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9,556	730	-	3,274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1041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2,947	6,293	7,309	5,000	투자계획 변경	1069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900	-	7,630	-	투자계획 변경	1069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1,800	-	9,347	-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1069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 업	2,164,374	336,121	273,000	327,879	투자계획 변경	1107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 장선 건설	460,280	14,800	83,876	56,857	투자계획 변경	1107

## 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 □ 특별회계는

- 지방재정법 제9조<sup>48)</sup> 및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특정한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201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된 특별회계를 합쳐 1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음
-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5.44% 줄어든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2조 7,87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큰 폭인 8.30%, 2,137억원이 증액되어 편성.

### □ 공기업특별회계는

- 전년대비 6.35%, 788억원 증액된 1조 3,19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부청사 건립 완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94% 줄어든 2,7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에 실시한 278억원 규모의 지방채 고금리 차환 등의 미실시로 전년대비 △4.29%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음
- 반면 용지및주택판매수익을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1.81% 103억원 증가된 5,79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의 급증을 전망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도 43.68% 903억 원이 증액된 2,967억 원으로 편성함.

48)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기타특별회계는

- 2014년에 1조 3,327억원규모에서 10.12% 1,349억원 증액된 1조 4,67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10월 마친 2014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중 고금리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대한 차환을 4,860억원 추진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최근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기조에 따라 고금리로 발행된 지방채를 저금리로 변경함으로써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당초 지방채 발행 조건, 차환 대상, 차환 가능 및 지방채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금년 8월에 설치근거인 조례<sup>49)</sup>가 마련되어 2015년부터 운용 예정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013.12.30일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채투자 명목으로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전된 기금을 바탕으로 42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음
-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시 기금으로부터 총 1,025억원<sup>50)</sup>을 받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데, 2013.12.30일 200억원이 전입된 이후로 이전금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sup>51)</sup>인 바, 현재 추진상황 및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9)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50) 2013년 200억원 / 2014년 338억원 / 2015년 338억원 / 2016년 149억원

51) 2014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 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00억원 편성되어 있음



○ 아울러 2013년에 인천시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된 200억원중 2015년  
 예야 42억원만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비로 전  
 액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편성하고 있어, 특별  
 회계 운용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인지, 미 전입금의 전  
 입시기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특 별 회 계	2,787,154	2,573,470	213,685	8.3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319,523	1,240,764	78,759	6.3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4,408	288,671	△14,263	△4.9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510	176,068	△7,557	△4.2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579,635	569,340	10,295	1.8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6,969	206,685	90,284	43.68
기 타 특 별 회 계	1,467,632	1,332,706	134,926	10.1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894	8,543	△649	△7.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5,871	286,608	9,262	3.23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0,709	33,241	△2,532	△7.62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02	4,016	△3,814	△94.98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402	74	3,327	4488.2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191	35,228	△2,037	△5.7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7,673	47,400	10,273	21.6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52,628	468,210	△15,582	△3.33
도시개발특별회계	14,510	11,580	2,930	25.30
장카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96	128	168	131.11
기반시설특별회계	2,140	2,140	-	0.0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3,565	12,307	1,258	10.22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551,327	423,020	128,307	30.3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4,224	-	4,224	순증

## 사. 주민참여예산은

- 2011년 8월 「지방재정법<sup>52)</sup>」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8개 사업, 7억원을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공감하는 사항들을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재정의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판단되나
- 지난해에는 총 51건 138억원이 제안되어 최종 2014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43건 64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사업의 84.3%, 금액으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영률을 보였으나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반영률이 건수로는 50건중에 8건으로 16.0%에 불과하고 반영 예산액은 1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 무실하다는 여론이 많은 바, 제안된 사업중 미반영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예산반영 >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제안		반영		미반영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50	7,221	8 (16.0)	711 (9.8)	42 (84.0)	6,510 (90.2)
일반회계	47	6,521	6 (12.8)	261 (4.0)	41 (87.2)	6,260 (96.0)
특별회계	3	700	2 (66.7)	450 (64.3)	1 (33.3)	250 (35.7)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및 이에 따른 예산반영현황·사업계획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473쪽 ~ 483쪽) 참조

52)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아. 성인지예산은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구분	대상 사업	비 고
필수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자치단체시행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법(‘12.3.16)에 따른 분석평가대상사업
선택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 2013년에 처음 시작된 성인지예산은 2015년에 92개사업에 1,25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2014년보다 사업수는 11개(△10.68%), 예산액은 203억원(△13.94%) 등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14년에 운영되었던 감사관실 등 4개부서 8개사업 12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한 전년도에 이어 2015년에도 편성된 사업들도 대부분 일정부분 삭감된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	
	사업개수	예산액	사업개수	예산액	사업개수	예산액
총 계	92	125,392	103	145,710	△11 (△10.68)	△20,317 (△13.94)
일 반 회 계	91	123,982	103	145,710	△12 (△11.65)	△21,728 (△14.91)
특 별 회 계	1	1,410	-	-	1 (신규)	1,410 (신규)

○ 또한 성인지예산의 건수로는 51.09%에 해당하는 47건이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규모로는 1,012억원으로 전체의 80.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이제 3년차에 해당하기는 하나, 성인지예산의 기본목적인 성평등이 아닌 복지·여성중심의 예산편성제도로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실국별 안배는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196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15년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는 ‘여초’ 시대를 예견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성별 특성에 맞는 정책실행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 %)

구 분	개수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율
합 계	92	125,392	100.00	145,710	100.00	△20,317	△13.94
대 변 인 실	2	370	0.29	859	0.59	△489	△56.95
교 육 기 획 관 실	1	196	0.16	196	0.13	1	0.46
소 통 기 획 관 실	1	72	0.06	83	0.06	△11	△13.32
기 획 관 리 실	4	656	0.52	434	0.30	223	51.36
경 제 수 도 추 진 본 부	9	12,866	10.26	14,588	10.01	△1,721	△11.80
안 전 행 정 국	7	1,429	1.14	1,253	0.86	176	14.01
보 건 복 지 국	19	68,373	54.53	61,996	42.55	6,377	10.29
여 성 가 족 국	28	32,827	26.18	42,914	29.45	△10,088	△23.51
건 설 교 통 국	3	4,457	3.55	3,140	2.15	1,318	41.97
문 화 관 광 체 육 국	6	2,354	1.88	3,729	2.56	△1,375	△36.87
환 경 녹 지 국	7	647	0.52	3,034	2.08	△2,387	△78.66
인 재 개 발 원	1	289	0.23	317	0.22	△28	△8.70
농 업 기 술 센 터	2	143	0.11	0	0.00	143	신규
종 합 문 화 예 술 회 관	1	587	0.47	652	0.45	△65	△9.97
시 립 박 물 관	1	126	0.10	127	0.09	△1	△1.04

## 1. 중점 심사내용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관련 서울시에서 전 입된 200억원 전액 미편성 사유, 향후 편성 계획 및 나머지 잔액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 수 있도록 강구 바람
- 인천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중인데 이에 대한 현재 추 진상황 및 2015년도 예산 감소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
- 장애인 생활시설종사자 장려금 14년에 26억원이던 장려금이 15년에 는 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상임위 심사시 15년도 본예산에 신설경기장 임대수입으로 50억원이 신규로 증액 건의되었는데 미계상 사유 및 징수 가능여부 등
- 분권교부세가 15년에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로 편입해서 받을 경우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늘어야 하는데, 보통교부세 산정에 문제가 없 는지 및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적극 추진 요망
- 시정 주요현장 견학관련 시민들에게 시정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금년에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청라, 영종지역의 신설 도서관 3곳 에 대한 개관준비 및 개관료 미편성 사유
- 버스준공영제 관련하여 내년도 840억원 편성내역, 상임위에서 140 억원 삭감 사유 및 삭감시 문제점 등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융통성 있게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중구와 용진군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소음 측정 등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변경안과 관련하여 당초에 15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도로개설 사업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없어지고 특히 수년후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검단신도시 주변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인바, 충분한 검토후 변경하기 바람
- 검단지역 인구가 1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도서관이 없어 5,6년 전에 마전도서관 신축 얘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운영중에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바, 모델하우스 사용 종료후 임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 강구 요망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이 부족하여 대기수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
- 연희공원 및 용현녹지 조성 주체 및 계획은
- 고도화 정수처리시설 설치시 효과, 국비 지원 현황 및 우리시 진행 상황 등
- 가족공원사업단 운영비가 매년 수억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직원변동 현황, 신규 시설 추가상황 등
- G-Tower의 임대료 및 사무실 활용 방안

-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경기장 위탁금, 시민합창단 운영 등 사업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
- 재개발 재건축관련하여 직권해제 추진 가능여부 및 민원발생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 부평풍물축제의 운영실태 및 풍물의 대중화를 위해 풍물전문단 구성 의향 및 풍물 활성화 방안 강구요망
- 성인지 예산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인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 생활체육회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 과다 집행 문제 및 보조금 지급 후 평가 및 감독철저 필요
- 인천국제교류재단 사업내용, 예산편성 현황, 타사업들과의 중복여부
-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적정성, 자원확보 대책, 추진시기 등
- 한옥마을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 민간경상·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출연금 등 과다계상 및 적정성 여부

## 2. 토론요지

- 1) 찬성 : 없음
- 2) 반대 : 수정가결(재석위원 10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
  - 찬성 : 황인성, 최석정, 박종우, 손철운, 유제홍, 이영훈, 제갈원영, 허준 위원
  - 반대 : 조계자 위원
  - 기권 : 임정빈 위원

### 3. 심사결과 : 수정가결

#### 3-1.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7,764,871,755	△1,500,000	1,200,000	7,764,571,755
일반회계	4,977,717,426	△1,500,000	1,200,000	4,977,417,426
특별회계	2,787,154,329	0	0	2,787,154,329
공기업특별회계	1,319,522,788	0	0	1,319,522,788
상수도사업	274,408,482	0	0	274,408,482
하수도사업	168,510,456	0	0	168,510,456
경제자유구역	579,634,819	0	0	579,634,819
지역개발기금	296,969,031	0	0	296,969,031
기타특별회계	1,467,631,541	0	0	1,467,631,541
학교용지부담금	7,894,427	0	0	7,894,427
의료급여기금	295,870,575	0	0	295,870,575
오류지구토지	30,709,425	0	0	30,709,425
마전지구토지	201,628	0	0	201,628
불로지구토지	3,401,617	0	0	3,401,617
도시교통사업	33,191,078	0	0	33,191,078
광역교통시설	57,673,000	0	0	57,673,000
도시철도사업	452,627,822	0	0	452,627,822
도시개발	14,510,000	0	0	14,510,000
장기미집행도시	295,827	0	0	295,827
기반시설	2,140,000	0	0	2,140,000
지하도상가	13,564,651	0	0	13,564,651
아시아경기대회	551,327,491	0	0	551,327,491
수도권매립지주변	4,224,000	0	0	4,224,000



### 3-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7,764,871,755	△31,615,731	31,315,731	7,764,571,755
일 반 회 계	4,977,717,426	△28,790,803	28,490,803	4,977,417,426
특 별 회 계	2,787,154,329	△2,824,928	2,824,928	2,787,154,329
공기업특별회계	1,319,522,788	△2,739,928	2,739,928	1,319,522,788
상수도사업	274,408,482	△30,000	30,000	274,408,482
하수도사업	168,510,456	△2,413,928	2,413,928	168,510,456
경제자유구역	579,634,819	△296,000	296,000	579,634,819
지역개발기금	296,969,031	0	0	296,969,031
기타특별회계	1,467,631,541	△85,000	85,000	1,467,631,541
학교용지부담금	7,894,427	0	0	7,894,427
의료급여기금	295,870,575	0	0	295,870,575
오류지구토지	30,709,425	0	0	30,709,425
마전지구토지	201,628	0	0	201,628
블로지구토지	3,401,617	0	0	3,401,617
도시교통사업	33,191,078	△85,000	85,000	33,191,078
광역교통시설	57,673,000	0	0	57,673,000
도시철도사업	452,627,822	0	0	452,627,822
도시개발	14,510,000	0	0	14,510,000
장기미집행도시	295,827	0	0	295,827
기반시설	2,140,000	0	0	2,140,000
지하도상가	13,564,651	0	0	13,564,651
아시아경기대회	551,327,491	0	0	551,327,491
수도권매립지주변	4,224,000	0	0	4,224,000

### 3-3.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7,764,871,755	△1,500,000	1,200,000	7,764,571,755
일 반 회 계	4,977,717,426	△1,500,000	1,200,000	4,977,417,426
건설교통국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0,000	△1,000,000	0	0
북항 배후 도로 유지관리비 (일반부담금)	0	0	1,200,000	1,200,000
항만공항해양국				
인천도화지구 공동 물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0,000	△200,000	0	0
서해5도 수산물 직매장(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00,000	△300,000	0	0
특 별 회 계	2,787,154,329	0	0	2,787,154,32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319,522,788	0	0	1,319,522,788
기 타 특 별 회 계	1,467,631,541	0	0	1,467,631,541

### 3-4.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7,764,871,755	△31,615,731	31,315,731	7,764,571,755
일 반 회 계	4,977,717,426	△28,790,803	28,490,803	4,977,417,426
의회사무처	11,315,931	△21,200	0	11,294,731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21,200	△21,200	0	0
대변인실	8,234,306	△80,000	120,000	8,274,306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513,000	△20,000	0	493,000
굿모닝인천 시각장애인용 제작	60,000	△30,000	0	30,000
다문화가족(외국인) 생활정보 신문 발간	0	0	120,000	120,000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280,000	△30,000	0	250,000
교육기획관실	544,458,882	△10,000	10,000	544,458,882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793,273	△10,000	0	783,273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	0	0	10,000	10,000
국제협력관실	6,355,677	△550,000	0	5,805,677
MICE산업 통계조사	50,000	△50,000	0	0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158,000	△500,000	0	1,658,000
기획관리실	730,232,275	△4,031,097	88,915	726,290,093
예비비	51,704,227	0	88,915	51,793,142
민간경상보조금(일괄)	-	△3,668,030	-	△3,668,030
민간행사보조금(일괄)	-	△286,000	-	△286,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200,000	△50,000	0	150,000
시 산하 공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89,707	△19,707	0	7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정보통신공사사업시스템 유지 보수비 시도 분담금	14,800	△7,360	0	7,440
<b>안전행정국</b>	156,990,644	△100,000	130,000	157,020,644
명예퇴직수당	3,000,000	△100,000	0	2,900,000
방법용 CCTV 설치사업 지원	400,000	0	90,000	490,000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 표창 수상자 국내시찰용 국민관광상품권	0	0	10,000	10,000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지원	33,400	0	30,000	63,400
<b>소방안전본부</b>	193,672,883	△366,000	337,000	193,643,883
사전재난영향성 평가단 우영수당	12,600	△6,000	0	6,600
본부 및 8개 소방서 구조장비 구입	100,000	△80,000	0	20,000
노후 구급장비 확충	100,000	△80,000	0	20,000
공공요금 및 체세	155,892	△30,000	0	125,892
UN ISDR 임차료, 관리비	180,000	△30,000	0	150,000
공항소방서 구조구급장비 확충	227,500	△140,000	0	87,500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시설비)	0	0	300,000	300,000
세탁차 운영보조(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0	30,000	30,000
의용소방대 국내 시찰	0	0	7,000	7,000
<b>보건복지국</b>	566,196,378	△1,070,000	1,429,373	566,555,751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423,944	0	65,000	488,944
쪽방상담소 운영	159,549	0	42,000	201,549
장애인단체활성화 지원사업	725,000	0	100,000	825,000
시자체 중증장애인 IL센터 운영	280,000	0	40,000	32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위기가정 가족치료상담	20,000	0	15,000	35,000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960,000	△370,000	0	590,000
마약퇴치사업 추진	28,600	0	10,000	38,600
독립유공자·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진료	80,000	0	49,000	129,000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	976,987	0	92,013	1,069,0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000	0	20,000	60,000
기초수급자자녀 교복비 지원	0	0	300,000	300,000
군구자원봉사센터지원(자원봉사관리시스템운영)	0	0	167,000	167,000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0	0	140,000	140,000
공공의료특화사업(출연금)	0	0	270,000	270,000
국가암 도서지역 도선료	0	0	10,000	10,000
명품관 건물 유지보수	0	0	5,000	5,000
정신보건사업단 운영	0	0	5,600	5,600
백범추모식 행사	7,200	0	800	8,000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참가	4,850	0	550	5,400
6.25전쟁기념행사및전적지순례사업	11,708	0	33,292	45,000
광복회민족정기선양사업	18,000	0	2,000	20,000
상이군경회 전적지순례및안보의식고취사업	8,000	0	6,500	14,500
전몰군경미망인회 안보의식교육	13,000	0	2,000	15,000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전쟁 UN묘지 순례사업	4,750	0	250	5,000
전몰군경유족회 호국명령위령추모사업	12,000	0	2,000	14,000
무공수훈사회 조국통일및국가발전사업	15,000	0	1,500	16,5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범우용사촌운영및자활사업 등지원	19,000	0	1,000	20,000
고엽제전우회 운영비및사업 지원	54,000	0	4,400	58,400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및 사업지원	20,900	0	1,100	22,000
월남전참전자회 사업지원	45,000	0	5,000	50,000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 업지원	21,000	0	2,000	23,000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 국유족회사업지원	6,000	0	500	6,500
재향군인회 향군그린운동사 업	19,000	0	1,000	20,000
재향군인회 특수지역 격전 지순례및사업지원	17,000	0	3,000	20,000
청소년등전후세대 안보현장 견학	95,000	0	5,000	100,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 려수당	2,613,800	△700,000	0	1,913,8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0	0	26,868	26,868
<b>여성가족국</b>	<b>1,181,973,949</b>	<b>△1,516,920</b>	<b>3,009,315</b>	<b>1,183,466,344</b>
제20회 여성주간행사	2,000	0	18,000	20,000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35,000	0	465,000	700,000
출산준비물 지원	82,000	0	206,000	288,000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107,000	0	68,100	175,100
경로식당 무료급식	2,082,761	0	348,000	2,430,761
경로당 운영지원	2,090,212	0	272,000	2,362,21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	1,690,000	0	290,000	1,980,000
개인(노인)운영 신고시설 지 원	78,000	0	20,075	98,075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2단 계)	5,740,000	△1,000,000	0	4,740,000
여성리더 육성	0	0	30,000	30,000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 정지원	0	0	563,640	563,64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0	0	227,000	227,000
청소년국제교류	0	0	48,000	48,000
한중일 음악교류	0	0	17,000	17,000
경로당 기능보강(생활 집기류)	0	0	100,000	100,000
겨울철 어려운 아동 지원	0	0	80,000	80,000
출산장려사업 지원(민간위탁금)	0	0	256,500	256,500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350,000	△100,000	0	1,250,000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6,637,000	△416,920	0	6,220,080
<b>문화관광체육국</b>	<b>167,101,389</b>	<b>△4,600,586</b>	<b>4,325,700</b>	<b>166,826,503</b>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700,000	0	300,000	1,000,000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각종 행사지원	20,000	0	30,000	50,000
제4회 인천광역시장기 초·중·고교 야구대회	14,300	0	5,700	20,000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2,000,000	0	1,300,000	3,300,000
2015 인천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 대회	60,000	0	40,000	100,000
2015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150,000	0	50,000	200,000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3,500,000	0	300,000	3,800,000
2015한일검도교류대회	0	0	20,000	20,000
초중고 전국사격대회	0	0	30,000	30,000
남구 도서관 건립사업	0	0	1,000,000	1,000,000
문화예술정보망 웹서버 구축 등	0	0	50,000	50,000
부평아트센터 건립 임대료 지원	1,892,000	△378,400	0	1,513,600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지 운영	130,000	△130,000	0	0
인천시티투어 운영	334,000	△50,000	0	284,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도원체육관/수영장 위탁	2,771,554	△277,155	0	2,494,399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3,251,938	△325,194	0	2,926,744
소규모체육시설 위탁	1,089,497	△108,950	0	980,547
송도 LNG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위탁	1,126,877	△112,688	0	1,014,189
문학경기장내 체육시설 운 영	1,127,356	△112,736	0	1,014,62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위탁	2,634,418	△263,442	0	2,370,976
승기잔디구장 위탁	175,103	17,510	0	157,593
문학경기장 위탁	905,834	△90,583	0	815,251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위탁	4,547,447	△454,745	0	4,092,702
계산국민체육센터 위탁	3,394,128	△339,413	0	3,054,715
공연 인쇄물 및 현수막 제작 등	44,100	△10,000	0	34,100
객원지휘료	42,000	△12,000	0	30,000
연주복	25,200	△25,200	0	0
공연의상 제작	37,000	△7,400	0	29,600
객원 출연	23,000	△3,000	0	20,000
객원 출연료	12,000	△3,000	0	9,000
인천시민합창단 운영	130,000	△130,000	0	0
도서관 개관비(3개소)	0	0	1,200,000	1,200,000
생활체육진흥사업	100,000	△100,000	0	0
생활체육회운영지원	875,029	△809,382	0	65,647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 대회	8,000	△8,000	0	0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244,600	△244,600	0	0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79,000	△79,000	0	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5,176	△22,588	0	22,588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00,000	△100,000	0	0
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5,600	△5,600	0	0
시민생활체육대회	100,000	△100,000	0	0
함께하는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0,000	△40,000	0	0
2015 세계 책의 수도 행사 추진	800,000	△200,000	0	600,000
송년제야의 밤 행사	70,000	△40,000	0	30,000
<b>경제수도추진본부</b>	199,511,415	△2,969,000	2,319,000	198,861,415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1,200,000	△2,864,000	0	8,336,000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525,000	△105,000	0	420,000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41,000	0	10,000	51,000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330,000	0	40,000	1,370,000
노조간부 특별교육	20,000	0	20,000	40,000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40,000	0	40,000	80,000
근로자 무료합동결혼식	6,000	0	4,000	10,000
인삼명품화 사업	250,000	0	100,000	350,000
강화첨단농업 육성사업	500,000	0	300,000	800,000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 원	300,000	0	200,000	500,000
농기계 임대사업(강화)	600,000	0	150,000	750,000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90,000	0	90,000	180,000
인천 과학문화진흥 지원사업 (인천대 과학영재교육 연구소)	0	0	50,000	50,000
노동포럼 개최	0	0	3,000	3,000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0	0	30,000	3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0	0	98,000	98,000
병충해 방제용 무인항공기 구입(용진)	0	0	176,000	176,000
인천시니어 창업센터 사업	0	0	18,000	18,000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0	0	40,000	40,000
로봇산업 육성비	0	0	300,000	300,000
인천테크노파크 거점기간 운영지원사업	0	0	300,000	300,000
강화농축산물 홍보 유통 및 직거래 사업	0	0	100,000	100,000
저산소표적질환센터	0	0	100,000	100,00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69,000	0	150,000	1,819,000
<b>환경녹지국</b>	220,445,543	△346,000	1,966,000	222,065,543
환경공단 본부 운영	3,006,717	△346,000	0	2,660,717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	124,000	0	36,000	16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500,000	0	250,000	1,750,000
청천천 악취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0	0	10,000	10,000
굴포천 악취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50,000	50,000
연희공원 조성	0	0	420,000	420,000
용현녹지조성	0	0	1,200,000	1,200,000
<b>도시디자인추진단</b>	1,397,512	0	1,230,000	2,627,512
도시경관 변천 기록 및 관 리시스템 구축	0	0	100,000	100,000
동춘터널 및 동춘교 야간경 관 개선사업	0	0	200,000	200,000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0	0	400,000	400,000
간관이 아름다운 거리 전산 시스템 구축	0	0	100,000	100,000
선학동 간관개선사업	0	0	430,000	43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감 액	증 액	
<b>건설교통국</b>	531,251,711	△12,000,000	10,930,000	530,181,711
준공영제 재정지원	84,000,000	△10,000,000	0	74,000,000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2,000,000	△2,000,000	0	0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1,000,000	0	500,000	1,500,000
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지원(문학산터널)	0	0	6,192,000	6,192,000
동인천역 북광장 정비사업	0	0	50,000	50,000
택시운수종사자쉼터 관리운영	0	0	32,000	32,000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운수업계보조금)	0	0	1,100,000	1,100,000
계양구 효성동 상록연립부근 도로개설	0	0	935,000	935,000
북항 배후 도로 유지관리	0	0	1,200,000	1,200,000
도로 및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용역	0	0	421,000	421,000
영흥 및 선재대교 유지관리비	0	0	500,000	500,000
<b>도시계획국</b>	150,457,796	△300,000	75,500	150,233,296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	300,000	△300,000	0	0
2015 인천건축문화제	48,000	0	32,000	80,000
빈집정비사업	0	0	43,500	43,500
<b>항만공항해양국</b>	191,067,926	△830,000	2,520,000	192,757,926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실시설계비	400,000	△400,000	0	0
서해5도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270,000	△270,000	0	0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160,000	△160,000	0	0
인천해양항만뉴스센터운영	80,000	0	40,000	120,000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1,000,000	0	1,000,000	2,00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400,500	0	90,000	490,500
연근해어선 장비 개량사업	30,000	0	40,000	70,000
냉동탑차 구입 지원	29,000	0	50,000	79,000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0	0	300,000	300,000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0	0	300,000	300,000
서해5도방문의 해 사업	0	0	700,000	700,000
<b>공 기 업 특 별 회 계</b>	<b>1,319,522,788</b>	<b>△2,739,928</b>	<b>2,739,928</b>	<b>1,319,522,788</b>
<b>상 수 도 사 업</b>	<b>274,408,482</b>	<b>△30,000</b>	<b>30,000</b>	<b>274,408,482</b>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수수료	38,400	0	10,000	48,400
신문, 전문잡지 홍보	45,000	0	20,000	65,000
사업비용 예비비	4,288,020	△30,000	0	4,258,020
<b>하 수 도 사 업</b>	<b>168,510,450</b>	<b>△2,413,928</b>	<b>2,413,928</b>	<b>168,510,456</b>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 설 설치 분담금(2단계)	2,191,528	△2,191,528	0	0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준 고도화 처리시설(3단계)	222,400	△222,400	0	0
관내(강화) 일원 하수도 정비 공사	100,000	0	100,000	200,000
관내(강화읍) 일원 하수도 준 설공사	100,000	0	100,000	200,000
자본예산 예비비	573,000	0	2,213,928	2,786,928
<b>경 제 자 유 구 역</b>	<b>579,634,819</b>	<b>△296,000</b>	<b>296,000</b>	<b>579,634,819</b>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150,000	0	100,000	250,000
IFEZ 공원 콘서트	120,000	0	80,000	200,000
G-Tower 교통유발부담금	40,000	△40,000	0	0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 운영	1,400,000	△100,000	0	1,300,000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	516,129	△156,000	0	360,129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사업예산 예비비	5,838,346	0	116,000	5,954,346
기 타 특 별 회 계	1,467,631,541	△85,000	85,000	1,467,631,541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191,078	△85,000	85,000	33,191,078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래밍 로그래밍 여비	0	0	85,000	85,000
예비비	1,160,810	△85,000	0	1,075,810

### ※ 기타 변경사항

#### ○ 사업명 변경

- 일반회계 예산서안 527쪽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55,600천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4쪽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25,000천원  
⇒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으로 사업명 변경

#### ○ 예산과목 변경

- 일반회계 예산서안 56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도심권) 민간위탁금 340,000천원  
⇒ 사무관리비 50,000천원, 기타보상금 270,000천원 및 민간경상보조금 20,000천원으로 각각 예산과목 변경

## 4. 소수의견

- 시의 복지비 축소에 대한 의회의 사업 증액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로 수정안 가결

## 5.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